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광양시 정기종합감사 －

2022. 12.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광양시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19년 11월부터 '22년 8월까지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조직·인사관리,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2. 9. 13.부터 9. 26.까지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2. 8월말 기준)

인 구	면 적	조 직
152,102명 (전남의 8.3%)	464.27km ² (전남의 3.8%)	○ 4국, 4실, 46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6면, 5동 ○ 행정구역 : 1읍, 6면, 5동

※ 직속기관(2)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4) : 교육보육센터, 물관리센터, 산단녹지센터, 휴양림사업소

2.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 '22. 8월말 기준)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정원	1,176	1	1,140	1	34
현원	1,120	1	1,085	1	33
증감	△56		△55		△1

3.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 '22. 8월말 기준)

구분	2020	2021		2022	
	본 예산	본예산		본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10,502	10,129	△373 (△3.6%)	11,602	1,473 (14.5%)
일반 회계	7,588	8,019	431 (5.7%)	9,393	1,374 (17.1%)
특별 회계	2,914	2,110	△804 (△27.6%)	2,209	99 (△4.7%)

구분	2020	2021		2022. 8월	
	최종 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12,142	11,538	△604 (△5.0%)	13,529	1,991 (17.3%)
일반 회계	9,350	9,571	221 (2.4%)	11,220	1,649 (17.2%)
특별 회계	2,792	1,967	△825 (△29.5%)	2,309	342 (17.4%)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총 63건의 위법·부당사항, 모범사례, 사전컨설팅을 확인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B+C +D+E+F)	시 정						주의 (B)	개선 (C)	권고 (D)	통보 (E)	경고 (F)			
					계 (A =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부과 추징	감액							기타		
63	20 (44명)	1 (1명)	19 (43명)	40	18 (1,450)	12 (1,450)	3 (99)	4 (101)	2 (221)	3 (1,029)	6	12	2	-	6	2	2	1

※ 위 처분요구사항에는 현지조치사항 13건 미포함(시정 6, 주의 7)
(재정상 처분 2건, 430백만원 / 재정상 처분 외 4건)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 및 처분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사·복무 분야

- ① 겸직허가 없이 사단법인 이사를 겸직하며 공무출장 중 업무에 관여한 사례에 대하여 징계요구 및 부당수령한 여비를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 계약·세외수입 분야

- ① 신속집행 목적으로 선금 대상이 아닌 민간위탁비 64건 338억을 선금 명목으로 증권이나 보증서 없이 부당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 기관경고 및 관련자 훈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요구
- 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조례상 단가가 아닌 부당하게 개별건축물 단가를 적용하여 106억원을 감면한 사례에 대하여 기관경고 및 관련자 훈계,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요구

▶ 보조금·건설 분야

- ① ○○회가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개인계좌로 입금시켜 지출 증빙서류도 없이 집행한 사례에 대하여 반환받아 세입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②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의 변경인가 절차를 미이행하고, 불필요한 관급자재 관리 인건비를 반영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2. 처분요구 요약

①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총무과)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매년 상·하반기(5월/11월)로 나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1.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위반한 전체 평정서열 결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기초하여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을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평정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총무과)는 '21.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급 ○○○은 ○○○○○○(평정단위)내 서열순위가 4번이므로 2~3번보다 높은 전체 서열순위를 부여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전체 2번을 부여하여,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21. 5. 31. 기준)가 정당한 순위 3번에서 2번이 되어 '21. 00. 00. ○○○급 승진대상자로 선발되게 함
- 그로 인하여 ○○○○○○(평정단위) 내 서열순위 2~3번이 승진자격 미달(승진최저연수와 교육시간 부족)로 ○○○은 부당한 서열변경에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 만일 불이익 받은 자들이 승진자격을 충족하였다면 부당한 서열변경이 승진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초래

2. 평정자 의견이 미반영된 근무성적평정 서열순위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2 제5항에 근무성적평정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수(20%), 우(40%), 양(30%), 가(10%) 비율대로 정하도록 규정
- 한편 위 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0급의 경우 ○○직렬(○○+○○○○직렬)과 ○○직렬(○○ 등 나머지)로, 0급의 경우 ○○·○○·○○직렬을 통합·작성 중

- 그런데 위 시(총무과)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총 6회의 근무성적평정 시 0급은 ○○직렬과 ○○직렬로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0급 ○○·○○·○○ 직렬은 통합하여 서열명부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각 직렬별로 작성
- 그로 인하여 0급 ○○직렬, ○○직렬, 0급 ○○·○○·○○직렬의 근무성적평정이 평정자 의견이 미반영된 서열명부를 근거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전체 서열이 임의 결정*되는 결과 초래

* 부서장 의사가 미반영된 채 동일 부서 내 ○○, ○○, ○○직렬이 전체 서열에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경우가 발생

3.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결과 미공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20. 9월)에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 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총무과)는 '20년 10월(하반기)부터 '22년 4월(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부서별)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미공개 중이고 그에 따라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실정
- 그로 인하여 평정결과의 공개로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령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

☞ '21.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 처리한 前 담당자 “훈계요구”

☞ 앞으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하며,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이 완료 되면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주의요구”

② 공무원 겸직허가 위반

- 위 시(충무과)는 '19. 1월부터 '22. 3월까지 비영리 사무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 00명*에 대해 겸직을 허가하고 관리

* 장학회 당연직 이사 00명, 학교의 운영위원(학부모위원) 00명

1. 소속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및 출장여비 부정 수령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 ○○0급 ○○○는 '21. 00월부터 '22. 00월까지 겸직 허가 없이 (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겸직*하며 이사회 00회, 총회 00회에 참석하는 등 사단법인 업무에 관여

* 이사('21. 00. 00.~'22. 00. 00.), 대표이사('21. 00. 00.~00. 00.)

- 또한 ○○○○0급 ○○○도 '21. 00월부터 '22. 00월까지 겸직허가 없이 (사)○○○의 이사로 겸직하고 총회 00회를 참석

* 이사('21. 00. 00.~'22. 00. 00.)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 외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하면 부정 수령액과 그 2배('21. 12월부터는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 ○○0급 ○○○는 '21. 00월부터 '21. 00월까지 총 00회에 걸쳐 출장 중 (사)○○○의 이사회 참석 등 사적 일을 수행하면서 00만원의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

- 그로 인하여 부서장이 지사체장의 허가 없이 공무외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여비를 부당 수령 하는 등 복무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를 초래

2. 겸직허가 위반혐의자에 대한 대처 미흡

- 「광양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조에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시 의무적으로 감사실장에 보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노인장애인과)는 '21. 00월 중순 (사)○○○ 산하 ○○○○○○에서 대표자 변경 문의 시 ○○○급 ○○○가 (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어 겸직 위반을 인지하였는데도 감사실장에게 미보고
 - 그로 인하여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가 공무 외 사적인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는 결과 초래

☞ 겸직허가 없이 사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한 ○○○급 ○○○ “경징계요구” 및 겸직허가 없이 사적업무를 수행한 ○○○○○급 ○○○과 겸직금지 위반을 의심하고도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은 ○○○○○급 ○○○은 “훈계요구”

☞ ○○○급 ○○○가 부정 수령한 여비 00만원과 가산금 00만원 등 총 00만원을 징수하고, 앞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③ 토석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허가과 등)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토석 채취허가지 복구비 예치 및 불법산지전용 관련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

1. 토석채취허가지 복구비 과다 부과

-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등에 토석채취 등 산지전용 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마다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등에 복구비는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면적에서 완충구역*을 제외한 면적에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1㎡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

* 허가지 인접지역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허가구역 경계 안쪽 너비 10미터 내의 구역

- 그런데 위 시(허가과)는 '20. 11월부터 '22. 4월까지 ○○○○성토용 토석 채취 복구비를 3차례 재산정하면서 완충구역을 미제외한 면적으로 복구비를 산정하여 (주)○○○건설 등 2개사에 7억 8,181만원을 과다 부과

2. 불법산지전용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 「산지관리법」 제42조 등에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복구준공검사 이후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복구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

*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 그런데 위 시(산림소득과)는 '20. 8월부터 '22. 6월까지 5건의 불법산지전용 복구의무자가 복구는 완료하였으나 하자보수보증금(573만원)을 미예치 하였는데도 복구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완료 처리
- 그 결과 복구준공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우려 초래

☞ (주)○○○건설 등 2개 사에 복구비 7억 8,181만원을 과다 부과하였으나 감사 기간 중 반환 조치하였으므로 “통보(시정완료)” 및 5건의 불법산지전용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 573만원을 예치하도록 “시정요구”

4 도시공원 무단점용자에 대한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공원과)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도시공원 158개소(521ha)를 관리
- 「공원녹지법」 제24조 제1항 등에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에게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등에 시장·군수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행위자가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공원과)는 ○○○가 '21. 00. 00.까지 도시공원 내 무단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추가적인 **행정명령에 대한 독촉과 행정대집행**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

(단위 : m²)

대상지	지목	토지면적	무단점용시설 현황			행정적 조치사항	
			행위자	면적	무단점용 내용	원상회복명령	현재 상황
광양시 ○○동 000	공원	000	○○○	00.00	시설물 설치 (○○○○○ 활용 목적 콘크리트 포장)	2021.00.00. (행위는 2021. 00월경)	원상회복되지 않은 채 행위자가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 중

-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등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공유재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공원과)는 '21. 00. 00.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 행위자 ○○○에게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만 한 채 '21. 00월부터 '22. 00월까지의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227만원의 변상금을 미부과**

- ☞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지 원상회복 및 행위자 과태료 부과 등 도시공원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現 담당 팀장 및 담당자 등 2명 **“훈계요구”**
- ☞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지 원상회복 및 변상금 226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5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세정과)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 등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자체장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35조에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세정과)는 '19. 9월부터 '22. 8월까지 지역주택조합입주권 취득세 등 신고·납부 누락세원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173건 5,065만 원을 부과 누락하여 자주재원 확충 기회를 상실

(단위: 건, 천원)

세목	부과대상	건수	부과(추징) 대상세액
계		173	50,651
취득세	지역주택조합입주권 취득세 추징	6	6,992
	지목변경 취득세 추징	2	2,098
	체비지 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징	1	2,673
	무허가건물 취득세 추징	26	19,963
	가설건축물 미신고 추징	11	18,015
등록면허세	개인하수처리시설 추징	116	616
	지하수 굴착신고 추징	11	294

☞ 취득세 등 173건 5,065만 원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

6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

- 위 시(철강항만과)는 '20년부터 '22. 8월까지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등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건축물을 준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수영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철강항만과)는 '22. 9. 26. 감사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 ○○ 유통물류센터 총공사비 109억 2,134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억 9,284만원을 세무서에 환급 미신청하여 재정손실 초래

(단위 : 원)

사업명 (공사명)	공사 기간	공사 시설비(매입액)			환급 예상액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 유통물류센터	2020~2022년 (2년)	10,921,349,930	9,928,499,937	992,849,993	992,849,993

☞ ○○○ ○○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 지출한 공사시설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9억 9,284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요구”

7. 광양시○○회 보조금 지원·관리 및 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부적정

- 위 시(체육과)는 '19년부터 '22. 8월까지 체육발전 및 시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시 ○○회·○○○○○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4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 등 6개 체육시설에 대해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중

1. 광양시○○회·○○○○○○회 사무국장 활동비 보조금 지원 부적정

-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다고 규정
- 또한 「행안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해석기준」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등이 해당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체육과)는 '19년부터 '22. 8월까지 ○○회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활동비 6,500만원을 시 ○○회 사무국장 ○○○ 등 2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사무국장 □□□ 4,400만원, 광양시○○○○○회사무국장 ○○○ 2,100만원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행정기관은 문서 생산 시 지체없이 전자문서시스템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체육과)는 '19년 광양시체육회 정산검사 결과 및 '19~'21년 광양시장애인체육회 정산검사 결과 문서의 등록번호를 미부여 및 미등록
- 그 결과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는 활동비 6,500만원이 부당지원되는 결과와 문서의 분실 및 위조 우려를 초래

2. 광양시○○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 「지방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34조 등에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체육과)는 '19년부터 '22. 8월까지 시 ○○회가 사무국장 ○○○에게 업무추진비를 ○○ ○○료로 772만 원을, ○○○○금으로 358만 원을, 2,019만 원은 ○○○○로 입금하는 등 부당집행하였는데도 이를 방치
- 그로 인하여 3,150만 원의 지방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3. 체육시설 위탁관리 부적정

- 「광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14조 등에 수탁자는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체육과)는 '19년부터 '22년까지 ○○○○○ 등 6개 체육 시설을 ○○○ 등에게 위탁하면서 수탁자(○○○ 등)가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4,344만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여 손해보험 등을 가입 하여 4,344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4.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 「지방회계법」 제50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체육과)는 '19년부터 '22. 8월까지 시 ○○회가 회계관직을 지정하지 않은 채 37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 또한 회계관직이 미지정된 상태에서 재정보험도 미가입 또는 일부 기간만 가입한 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치

☞ 시 ○○회·○○○○○○회 사무국장 활동비(6,500만원)와 업무추진비(3,150만원)를 부당하게 지원한 現 담당 팀장 **“훈계요구”**

☞ 시 ○○회 사무국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재정보증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2,019만 원은 반환하여 세입처리 하도록 **“시정요구”** 및 앞으로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지급 사례와 위탁 체육시설에 대해 시에서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요구”**

8 지연배상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산단과, 회계과)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추진
- 「지방계약법」 제3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률**(공사 0.05%, 용역 0.13%)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기성검사 후 인수한 경우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의 완성 부분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연배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
 - * 지연배상금=(계약금액-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완성 부분 기성액)×지체일 수×지연배상금률
- 그런데 위 시(산단과, 회계과)는 '20년 3월부터 '22. 8월까지 계약기간보다 공사 및 용역이 지연된 '○○○○ ○○사업' 등 2건에 대해
- 기성부분이 성질상 분할 할 수 없는 공사 및 용역인데도 기성금 지급(청구)액을 제외하여 정당한 지연배상금 1억 9,296만원 중 3,478만원만 부과한 채 1억 5,818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 다만 위 시(산단과, 회계과)는 '22. 00. 00. 감사관이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를 지적하자 '22. 00. 00., 00. 00. 과소 부과액 1억 5,818만원을 부과 처리

☞ 지연배상금 과소액에 대해 부과하였으나 관련 부서에 지연배상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시정완료)”

9 민간위탁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노인장애인과 등 14개 부서)는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복지관 운영' 등 31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

1. 민간위탁사업 계약체결 부적정

- 「광양시 민간위탁 조례」 16조 등에 민간위탁 사무대상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4조 등에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이행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함으로 계약 확정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정보통신과 등 7개 부서)는 '19. 8월부터 '22. 8월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복지관 운영' 등 48건(466억원) 사무를 해당 실·과에서 문서로 계약 체결
 - 그로 인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계약서가 체결된 채 위탁사업비 466억원이 집행되는 결과 초래

2. 계약보증금 납부 미이행

- 「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 (10%) 또는 「은행법」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준 공공기관 등만 보증금 납부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노인장애인과 등 6개 부서)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 ○○○ 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는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계약보증금 없이 민간위탁 추진
 - 그로 인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217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

3. 신속집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정

- 「지방계약법」 18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계약에서 검사 후 또는 검사 조서를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되, 「지방회계법」에 따른 선금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
- 또한 「지방회계법」 제35조 등에 선금급은 성질상 선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줄 경우만 가능하나, 민간위탁금은 선금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 *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경비, 공사·제조 또는 용역 대가(70%)
- 그리고 「계약집행기준」에 선금을 지급 시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도록 규정
- 한편 행정안전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20년부터 '22년까지 상·하반기 5차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시달하면서 선금급 집행을 활성화하되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안내
 - 그런데 위 시(체육과 등 6부서)*는 '20. 3월부터 '22. 6월까지 민간위탁 사업비는 선금 대상이 아닌데도 '○○○○복지관 운영' 등 64건 338억원의 사업비를 선금 명목으로 증권이나 보증서 제출 없이 부당하게 지급
- 그로 인하여 광양시가 법령을 위반한 허위성적으로 신속집행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선금급 채권 미확보로 사업자 부도 시 선금금을 회수할 수 없는 우려 초래

☞ 민간위탁사업비는 선금 지급이 불가한데도 선금을 지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한 6개부서 前 담당 팀장 14명에게 **"훈계요구"**

☞ 신속집행을 허위로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회계법령을 위반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및 앞으로 민간위탁 계약체결과 계약보증금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하수도과)는 개별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도시개발사업에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등을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를 추진
- 「하수도법」 제61조 등에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공공하수도의 시설·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련 공사 소요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부담금 산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또한 「광양시 하수도 조례」 제20조에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은 단위 단가*를 산정하여 하수 발생량만큼 부과하도록 규정
 - * 세제곱미터당=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³/일)
- 그리고 같은 조례 제18조에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산정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단가를 결정하고 공고하도록 규정
 - ** 광양시는 '09년부터 전남 평균 단위단가 반영 결정('21년 기준 1,914천원/m³)
- 그런데 위 시(하수도과)는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감면조항***에 미해당하는데도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개 도시개발사업에 40% 감면한 개별건축물 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106억 1,712만원을 과소 부과
- ***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의료급여 공공하수도시설 수급자, 중수도, 재이용 사용자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 과장, 現 담당 팀장과 담당자 등 3명 **“훈계요구”**
- ☞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6억원을 **과소 부과**한 건에 대하여 **“기관경고”**, 앞으로 타행위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대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주의요구”** 및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감면하려면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를 개정하도록 **“법령상 개선요구”**

11 기계식주차장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교통과)는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1.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 태만

-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도시지역 등에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4 등에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조치하도록 규정

*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다른 법령의 영업, 허가·면허·인가 등을 제한

- 그런데 위 시(교통과)는 '19. 8월부터 '22. 9. 26. 감사일까지 광양시 ○○동 ○○빌딩 기계식주차장이 장기간 고장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하였는데도 방치

※ 감사 개시 이후 인 '22. 00. 00.에서야 부설건축물 담당 건축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

- 또한 국토부와 전남도가 '19. 00. 00. 기계식주차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대상 수검 조치를 지시('19. 00.)하였는데도 행정조치 미실시
- 그리고 국토부와 전남도(도로교통과)에서 '19. 00월 기계식주차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 요청에 따른 점검결과 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22. 00. 00.에서야 '사용중지명령' 및 건축과에 통보

- 그로 인하여 강제이행금 부과 기회 상실 및 ○○빌딩에 대해 3년 간 ('19. 00월~'22. 00월) 부설주차장 확보를 면제해 주는 결과 초래

2. 정밀안전검사 미이행 기계식주차장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 「주차장법」 제19조23 등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 경과' 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이행 시 50만원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에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감경 과태료(20%)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 시 부과·징수 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교통과)는 '20. 00. 00. 광양시 ○○동 ○○빌딩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이행에 대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약 1년 3개월이 지난 '22. 9. 26. 감사일까지 미납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 기계식주차장 관리 업무와 과태료를 과소 부과한 現 담당자 “훈계요구”

☞ 앞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와 과태료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2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도로 유지·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도로과)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총 1,889개 노선 1,400km를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하여 관리

1.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로과)는 '19. 10월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미수립으로 시정요구를 받았고, '2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도 '22. 9. 26. 감사일까지 관리계획 등을 미수립
 - 또한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신규사업 추진하면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없이 ○○ 공약사항과 ○○○ 관심사업 위주로 7건의 실시설계 용역(22.5억원)을 추진 하는 등 도로사업에 410억원의 예산을 투입
- 그 결과 무분별한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정성이 훼손될 우려를 초래

2. 도로 유지·관리 업무 부적정

-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도로의 기능유지 등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점검 후 연 2회 정기 보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로과)는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22. 9. 26. 감사일까지 보수계획 미수립 및 정기 보수 미실시
 - 또한 '20. 00. 00. 민원이 발생한 “광양 ○○면 ○○ ○○ 정비 요구” 등 45건(건당 5백만원 이상)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수를 미실시
- 그 결과 도로 노면 파손, 안전시설물 등을 적기에 보수하지 못해 교통안전 저해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

☞ 도로건설 관리계획 등을 미수립한 現 담당 과장 “**훈계요구**”

☞ 도로 유지·보수 계획과 체계적·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13 자전거도로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교통과, 도로과)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총 216.1km의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읍 ○○시장 인근 주차장” 등 19개소에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

1. 자전거 주차공간 미확보 및 자전거도로 노선 고시 등 미이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11조 등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교통과)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노외 주차장 19개소(583면)를 조성하면서 총 234대(583면의 40%)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미마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7조 등에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노선명, 노선번호, 기·종점 등이 포함된 노선 현황을 지정·고시하고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로과)는 '22. 9. 26. 감사일까지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여 지정·고시를 하지 않았고 자전거도로대장도 미작성
- 그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편익이 저해되고 체계적인 자전거도로가 운영·관리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2. 자전거도로 시설물 설치 기준 미이행 및 유지관리 소홀

-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12조에 택지개발 조성 사업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지침」에 시설물은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 * (노면표시) 100m 간격, (안전표지) 200m 간격
 - 그런데 위 시(도로과)는 “○○지구 ○○개발사업” 등 승인된 2건에 대해 자전거도로 설치(L=9,628m)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22. 9. 26. 감사일까지 사업지구 내 자전거도로 시설물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채로 운영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자전거도로 상 시설물(노면포장, 안전휀스 등)이 파손될 경우 보수하고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로과)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자전거도로 시설물(볼라드, 데크 등)이 파손되었는데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미조치
 - 또한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보수 철저 지적을 받았는데도 '22. 9. 26. 감사일까지 28개소(개소당 1백만원 이상)를 미정비
- 그 결과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시설물 파손 및 유지보수 지연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

☞ 앞으로 노외 주차장에 자전거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등을 하도록 “주의요구” 및 체계적인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14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무단 사용

- 위 시(안전총괄과 등)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국·공유지가 포함된 도로·하천 등 공사 총 12건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
-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로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 등에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등을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안전총괄과 등)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지방도 000호선 확포장공사” 등 5건이 공사구간 내 편입된 국·공유지 122필지 76,096㎡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
 - 그로 인하여 5건의 공사의 경우 최소 8개월에서 최대 5년 4개월 동안 국·공유지(122필지 76,096㎡)를 무단 훼손·사용하는 등 국·공유재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를 사용 협의 없이 공사를 추진한 前 도로·하천 담당 팀장 2명 **"훈계요구"**

☞ 국·공유지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절차를 협의하도록 **"시정요구"**

15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 처리 부적정

□ 위 시(교통과 등)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노면표시가 포함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2건의 공사를 추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노면표시가 포함된 공사는 노면표시 기준*에 맞게 휘도**를 측정하여 검사성적서 확인 후 준공하도록 규정

* (백색) 240mcd/(m²·lx) 이상 ** (노면표시 반사성능) 광원의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양

- 그런데 위 시(교통과 등)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노면표시가 포함된 12건의 공사에 대해 휘도 검사 없이 준공금(1,190백만원)을 지급

- 그 결과 노면표시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야간 및 우천 시 교통상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 초래

☞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前 담당 팀장 및 담당자 2명 **"훈계요구"**

16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업무 등 추진 부적정

- 위 시(도시재생과 등 9개 부서)는 '20. 4월부터 '22. 8월까지 “○○○ ○○ ○○○센터 리모델링 건축설계 용역” 등 18건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설계용역 발주 전 **용역비 규모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를 하도록 규정

설계비 추정 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1억원 미만	필수	×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 (우선적용)

- 그런데 위 시(도시재생과 등 9개 부서)는 '20. 4월부터 '22. 8월까지 **설계 용역 18건을 발주하면서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미이행한 채 계약 의뢰**
- 그로 인하여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공공건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前 담당자 2명 **“훈계요구”**

☞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업무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7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건설과 등 26개 부서)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488건을 추진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
 -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 우려 및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35조 등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지정문화재에도 준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건설과)는 '21. 10월부터 '22. 9월까지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서 시행한 “○○○ ○○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
- * 관련 문화재 : 도 기념물 ○○○○
-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지 않고 사업 추진한 現 담당 팀장 “훈계요구”

18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관리 등 부적정

- 위 시(안전총괄과 등 19개 과·소)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40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 추진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등에 시설물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안전총괄과)는 '19. 11월부터 '22. 8월까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404개소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로서 시설물 관리계획 31회를 미수립하고, 민간관리주체가 1회를 미수립하였는데도 방치
 - 또한 도로과 등 7개 부서는 404개소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공공관리주체로서 284회*를 미 실시
 - * 정기안전점검 268회, 정밀안전점검 10회, 정밀안전진단 6회
 - 특히 도로과는 안전총괄과에서 13회에 걸쳐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254회 미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업무 태만
 - 그로 인하여 시설물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기능·성능 저하 등을 신속하게 점검·진단하지 못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

- ☞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도로과 現 업무 담당 팀장과 前 및 現 담당자 2명 등 총 3명 “훈계요구”
- ☞ 관련부서에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시정요구”

3. 모범사례

1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은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산단·공단 등 오염원 발생지 주변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오염원이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감시켜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

□ 추진배경

- 광양시는 POSCO 광양제철소 등 각종 산단·공단에서 발생하는 철가루 날림과 납·수은 등 중금속 수치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검출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정주기반을 위협받고 있어 도시 숲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필요
 - 광양제철 등 산단·공단 면적은 4,498ha(광양 전체면적 46,414ha 중 약 10% 차지)
- 또한 최대 산업클러스터인 광양항이 있어 컨테이너 운반 등 대형차량이 연중 도심을 가로질러 운행하여 각종 오염원에 간접적으로 노출
 - 여수항만공사 통계('22년 상반기) : 전국 항만 수출입물동량의 20.4%(전국 1위)

□ 추진개요

- 기 간 : 2020년 ~ 2023년
- 위 치 : 21개소(태인동 명당국가산단, 광양읍 익신산단 외 19개소)
- 조성규모 : 300ha(미세먼지저감숲 등 4개 분야 77개소, 미관숲 300ha, 도시녹화운동 1식)
- 사 업 비 : 321억원(국비 140, 도비 41, 시비 140) * 도시녹화운동 등 비예산 포함
- 사업내용 : 5개 분야(미세먼지저감숲, 기업참여 유도, 학습공원, 미관숲, 도시녹화운동)

구 분	추진목표	대 상	실행시기	실행방법	소요예산
미세먼지저감숲 조성	10개소	산단·공단 등	'19.~'23.	산림청 공모, 광양시 시행	260억원
기업참여 유도	50개소	민간기업	'17.~'30.	민·관 협약체결, 기업 시행	기업지원
숲속 학습공원 조성	17개소	청소년	'19.~'23.	관·학교 협약체결, 광양시 시행	10억원
미관숲 조성	300ha	공·사유지	'18.~'23.	대상지 선정신청, 광양시 시행	51억원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광양 시민 등	연중	시민단체 등 봉사활동	비예산

□ 추진실적

- “2050 탄소중립 실현, 숲속의 광양” 선언으로 녹화 활성화 : '21. 4. 5.
 - 도시숲 관리단 연중 운영으로 도심권 쾌적한 환경 제공('19.~'22. / 310명 운영)
- 산업단지 주변 등 다열·복층구조의 미세먼지저감숲 조성(6개소) : '19. ~ '22.
 - 노후 국가산단인 명당산단, 광양제철소 주변 집중 조성(4ha), 폐선부지(6km 구간)

폐선부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광양읍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조성 전	조성 후	조성 전	조성 후

- 광양시와 기업이 함께하는 “기업공원 조성(23개소)” : '17.~ '22.
 - 광양제철 등 기업과 자발적 기업공원 조성 MOU체결(13개소) 및 자체 관리

기업공원 조성		산림탄소상쇄숲 조성 등	
			
15호 공원	23호 공원	산림탄소상쇄숲 착공	기업참여 녹화운동

- 폐관사 등 활용 청소년 친화 학습공간 조성(16개소) : '19. ~ '22.
- 옥룡 백계산 동백림 중심으로 전국 최대 동백특화림 조성(300ha) : '18. ~ '23.
 - 유당공원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235호) 등과 연계한 동백정원 조성(10ha)

□ 기대효과

- 광양제철 등 오염원 주변에 대규모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등 저감
 - 미세먼지(PM10) : '18) 50 → '19) 32 → '20) 30 → '21) 30 → '22) 28
 - ※ 연도별 광양시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광양시 측정 3개소)
- 전국 최대 동백숲(300ha) 조성으로 광양 대표 생태관광 자원 개발
- 기업 등 자발 참여한 도심녹화운동으로 기업공원 조성(21억원 예산절감)
- 광양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산림청('21년)·도('22년) 우수기관 선정

2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업무시간에 민원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 편의 제공

□ 추진배경

- 지방세 정기분 부과 시 상담전화 및 방문민원 급증
- 근무시간 내 상담이 어렵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한 상담시간 확보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자동차세(6월, 12월) 및 재산세(7월, 9월) 납부기간 중
- 운영장소/기간 : 시청 세정과 / 평일 18:00~20:00(2시간)
- 운영방법 : 세정과(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주관으로 방문·전화민원 상담
 - 2명씩 근무조 편성(해당세목 담당팀 교대근무)
- 상담내용
 - 지방세 정기분 과세근거, 세액 산출 방법, 기타 지방세 법률 상담
 -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고지서 재교부, 과세내역 설명, 무인수납기 납부 지원 등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완료
 - 6월('22. 6. 16.~6.20.) 상담 실적 : **169건** (전화 160건, 방문 9건)
 - 7월('22. 7. 15.~8. 1.) 상담 실적 : **136건** (전화 129건, 방문 7건)
 - 9월('22. 9. 16.~9. 30.) 상담 실적 : **137건** (전화 131건, 방문 6건)
- 12월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계획('22. 12. 16. ~ '23. 1. 2.)

□ 기대효과

- 직장인 등 업무시간 중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의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납세 편의 제공 및 납세자와 소통하는 열린 세정 운영

□ 언론보도

광양시,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퇴근 후에도 편리하게 상담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간 중)



광양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에 직장 등의 사유로 업무시간 중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18~20시이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면 된다.

야간 상담 시간에는 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액산출방법, 편리한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고지서 재교부,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를 지원한다.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일정은 평일18~20시이며, 재산세(2022년 7월 18일 ~ 8월 1일)과 (2022년 9월 16일 ~ 9월 30일)이며, 자동차세(2022년 6월 16일 ~ 6월 30일)과 (2022년 12월 16일~ 2023년 1월 2일)이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평일 근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덜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4. 사전컨설팅 사례

1 광영시장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분할발주 가능 여부 건

1. 신청사유

- 광양시는 '15~'23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광영상설시장 증축공사를 추진 중
 - 또한 2023년 시비를 확보하여 기존 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예정
- ⇒ 광영시장 증축공사 완료 후, '23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시 증축공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분할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

2. 검토 의견서

- 증축공사와 리모델링공사 분할발주 가능 여부 :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 편에 따르면 다른공종과 시공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가 가능하다고 규정
 - 또한 같은 기준 제1장 제1절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편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란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이라고 규정
 - 광양시 사업계획에 따르면 광영시장 증축공사는 기존 시장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며,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 완료된 시장건물에 시장상인을 임시 이주 후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공사임
 - 따라서 두 공사는 동일구조물 공사에서 규정한 일체식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발주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한편 같은 기준 제1장 제1절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공사는 각각을 단일공사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또한 각각 단일공사로서 설계용역을 별도 발주하는 것이 타당

5. 처분요구서

목 차

① 운전직 공무원 월액여비 부당 지급(개선)	34
②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주의)	37
③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주의)	43
④ 공무원 겸직허가 위반(징계·훈계·시정)	45
⑤ 토석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시정완료)·시정] ...	51
⑥ 도시공원 무단점용자에 대한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시정)	55
⑦ 숲길 조성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59
⑧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62
⑨ 지방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관리 부적정(시정·주의)	66
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시정)	70
⑪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 부적정(시정)	72
⑫ 광양시○○회 보조금 지원·관리 및 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부적정(훈계·시정·주의) ·	75
⑬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시정)	83
⑭ 지연배상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시정완료)]	85
⑮ 민간위탁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기관경고·훈계·주의)	88
⑯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기관경고·훈계·주의·개선)	96

①7 기계식주차장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주의)	101
①8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부적정(통보)	106
①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통보)	109
②0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 도로 무단점용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시정)	116
②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등 부적정(시정·주의)	121
②2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도로 유지·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통보)	128
②3 자전거도로 업무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134
②4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무단 사용(훈계·시정)	141
②5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계열회사 간 입찰참여 제한 부적정(훈계)	145
②6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 처리 부적정(훈계)	148
②7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업무 등 추진 부적정(훈계·주의)	152
②8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156
②9 ○동 ○○○○ ○○○○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훈계·시정)	159
③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추진 부적정(훈계·시정)	166
③1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관리 등 부적정(훈계·주의)	174
③2 일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79
③3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등 미이행(훈계·시정)	183
③4 건설기계사업 등록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시정)	189
③5 재해영향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94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운전직 공무원 월액여비 부당 지급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20. 1월부터 2022. 8월까지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월액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운전직 공무원 23명에게 [표]와 같이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운전직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현황(2020.1월~2022.8월)

(단위 : 명, 원)

지급대상	대상인원	월액여비 지급액		지급제외
		15일 이상 출장 시	15일 미만 출장 시	
운전직	23명	170,000원 (월액 지급)	1일 당 11,333원 (출장일수×11,333원)	-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편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에 따르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하고, 이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월액여비지급규정」 제2조에 따르면 월액여비 지급 대상은 읍·면·동 소속직원, 지도직 직원, 운전원, 청원경찰, 상·하수도 검침원, 누수탐사원, 개인급수공사업무 담당자, 수질검사원, 보건지소(중마통합보건지소 제외), 보건진료소 근무 직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소속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 지급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총무과)는 2021. 1월부터 2022. 8월까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직은 4시간 이상 출장한 경우에만 근무지내 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반하는 운전직을 월액여비 지급 대상자로 포함된 「광양시 지방공무원 월액여비지급규정(2006. 5. 17.)」을

근거로 [별표] “운전직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명세”와 같이 4시간 미만으로 근무
지 내에 출장한 지방○○9급 ○○○ 등 23명에게 적게는 22,630원에서 많게는
2,019,830원까지 과다 지급되는 등 총 월액여비 8,164,220원을 과다 지급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월액여비지급규정」 월액여비
대상에서 운전직을 제외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총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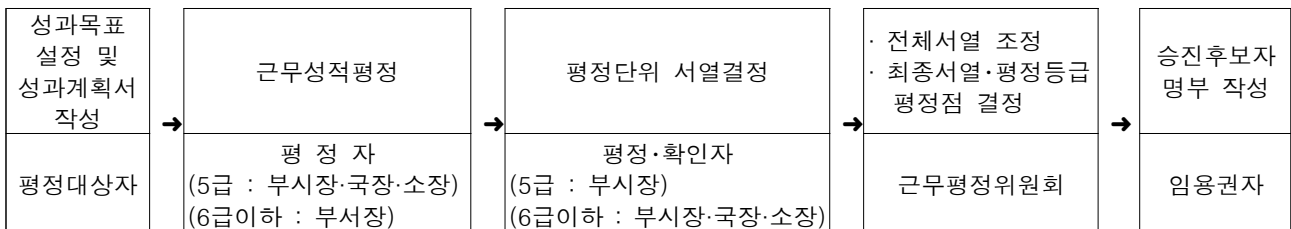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매년 상·하반기(5월·11월)로 나눠 [표 1]과 같이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다.

[표 1] 근무성적평정 절차



자료 : 광양시 근무성적평정지침 재구성

지방○○주사보 ○○○는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평정단위별 서열순위를 위반한 전체 평정서열 결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를 작성한 후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 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평정단위별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평정서열을 결정하도록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총무과)는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표 2]와 같이 지방○○0급 ○○○은 평정단위(○○○○○○○) 내 서열순위가 4번 이므로 같은 평정단위 내 서열순위 2번 ○○○과 서열순위 3번 ○○○보다 전체 지방○○0급 서열명부에서 높은 순위를 부여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전체 지방○○0급 서열명부에서 ○○○과 ○○○보다 높은 전체 2번을 부여하여 2021. 5. 31.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정당한 순위 3번이 아닌 2번이 되어 2021. 00. 00. 지방○○0급 승진대상자로 선발되게 하였다.

[표 2] 근무성적평정서열 부당 변경으로 인한 승진후보자명부 변동 현황(2021. 상반기)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순위(2021. 5. 31.기준)									
		직급	성명	평정 단위 서열	전체 서열			정당한 순위					확정된 순위				
					순위	정당한 평정점	부여한 평정점	순위	계	근무 성적 평정점	경력	가산점	순위	계	근무 성적 평정점	경력	가산점
2021년 상반기	○○○○○	○○0급	○○○	1	1	70	70	1	93.57	66.75	26.32	0.5	1	93.57	66.75	26.32	0.5
			○○○	2	3	67	63.5	미등재					미등재				
			○○○	3	4	63.5	60	2	88.80	60	28.3	0.5	3	88.80	60	28.3	0.5
			○○○	4	2	60	67	3	86.75	56.75	29.5	0.5	2	90.25	60.25	29.5	0.5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및 차세대인사량 축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평정단위(○○○○○○) 내 서열순위 2번 ○○○은 7급으로의 승진소요연수 부족으로, 같은 평정단위(○○○○○○) 내 서열순위 3번 ○○○은 교육이수시간 부족에 따라 승진자격 미달로 지방○○0급 ○○○은 부당한 서열변경에 관계없이 7급으로 승진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불이익 받은 자들이 승진자격을 충족하였다면 부당한 서열변경이 승진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평정자 의견이 미반영된 근무성적평정 서열순위 결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 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되,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 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광양시는 0급 공무원의 경우 ○○직렬과 ○○○○직렬을 통합한 ○○직렬 승진후보자명부를, ○○직렬과 ○○○○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을 통합하여 ○○직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있고, 0급 공무원의 경우 ○○직렬, ○○직렬,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근무성적평정 시 0급의 경우는 ○○직렬(○○직렬+○○○○직렬)과 ○○직렬(○○직렬과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로, 0급의 경우는 ○○직렬과 ○○직렬, ○○직렬을 통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근무성적평정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총무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총 6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추진하면서 0급의 경우는 ○○직렬과 ○○직렬로, 0급의 경우는 ○○직렬, ○○직렬, ○○직렬을 통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모든 직렬별로 각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게 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표 3]과 같이 0급 ○○직렬과 ○○직렬, 0급 ○○직렬, ○○직렬, ○○직렬 인원의 근무성적평정이 평정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서열명부를 근거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전체 서열순위가 임의대로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근무성적평정 부당 실시 현황(2019.11월~2022.8월)

(단위 : 명)

근무성적평정 시기	계	0급			0급			
		소계	○○직렬 (○○직렬+○○○○직렬_)	○○직렬 (나머지 직렬)	소계	○○직렬	○○직렬	○○직렬
2019. 하반기	212	60	37	23	152	138	10	4
2020	상반기	211	58	38	153	139	10	4
	하반기	220	60	41	160	144	11	5
2021	상반기	221	65	44	156	139	12	5
	하반기	236	66	42	170	152	13	5
2022. 상반기	217	54	36	18	163	147	11	5

자료 : 광양시 근무성적평정 자료 재구성

4.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결과 미공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제1항¹⁾에 따르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

1) 2020. 9. 10. 시행

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광양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2 상반기까지 매회 근무성적평정지침을 모든 부서에 안내하면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2022. 9. 10. 개정되어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광양시는 평정단위별로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총무과)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시 평정단위 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이의제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와 그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진행으로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령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2021년 상반기 지방○○0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평정단위별 순위와 다르게 전체 서열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와 다른 전체 서열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하며,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감사실)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및 광양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에 대한 피의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및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징계사유를 통보받으면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0급 공무원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감사실)은 2021. 00. 00. ○○경찰서로부터 지방○○0급 ○○
○에 대한 ○○죄 ○○○○○○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으면 타당한 이유가 없을
시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
이 ○○법원의 결정 시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를 수용하여 2022. 00
월까지 약 00개월 동안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22. 00. 00. 이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시에도 ○○○○○○송치
통보 건이 징계의결요구 대상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전라남도인사위원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 위반으로
부당하게 자체 ○○처분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방○○0급 ○○○의 비위행위에 대해 권한 있는 전라남도인
사위원회의 합당한 처분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앞으로 징계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을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징계·훈계·시정요구

제 목 공무원 겸직허가 위반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총무과, 노인장애인과)

징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광양시 ○○○○과 지방○○○○○○○○ ○○○

②광양시 ○○○○○과 지방○○○○○○○○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비영리 사무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 11명에 대한 겸직을 허가하였고,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지방○○○○○ ○○○는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소속 직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 ○○○은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면에서 소속 직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하는 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방○○○○○○○○ ○○○는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소속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및 출장여비 부정 수령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의2에 따르면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 외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의2 제1항1)에 따르면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금액을 환수하고, 동시에 부정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더 징수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의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 소속 공무원은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 광양시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 외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

또한 광양시는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금액을 환수하고, 동시에 부정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더 징수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등의 조치 등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지방○○○급 ○○○는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2021. 00월부터

1) 2022. 4. 6.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22. 00월까지 광양시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표 1]과 같이 사단법인 ○○○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²⁾자격으로 사단법인 ○○○ 이사회에 00회, 총회에 00회 직접 참여하여 사단법인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가 사단법인 ○○○ 사무에 참여한 활동 현황(2021.00월~2022.00월)

구분	회의일시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자료 :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제출서류(사단법인 ○○○ 등기부 및 회의록) 재구성

또한 지방○○○급 ○○○는 소속 직원의 허위 출장 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당시 ○○○과장)이면서도 2021. 00월부터 2021. 00월까지 [표 2]와 같이 총 00회에 걸쳐 관내 출장 중 사단법인 ○○○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적인 일을 하였으며 00만원의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였다.

[표 2] ○○○ 출장 여비 부정 수령 현황(2021.00월~00월)

출장시작	출장종료	출장지	당초 출장목적	실제근무내역 (허위출장내역)	부당수령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자료 : 광양시 총무과 제출서류(출장내역서) 및 ○○○과 제출서류(여비집행내역)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지방○○○○○급 ○○○도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2021. 00월부터 2022. 00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단법인 ○○○의 이사로 겸직³⁾하고 [표 3]과 같이 사단법인 ○○○ 총회에 00회 직접 참여하여 사단법인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3] ○○○이 사단법인 ○○○ 사무에 참여한 활동 현황(2021.00월~2022.00월)

구분	회의일시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자료 :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제출서류(사단법인 ○○○ 등기부 및 회의록) 재구성

2) ○○○ 이사 기간 : 2021. 00. 00.~2022. 00. 00. / 대표이사 기간 : 2021. 00. 00.~2021. 00. 00.

3) ○○○ 이사 기간 : 2021. 00. 00.~2022. 00. 00.

한편 총무과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데도 2021. 00월부터 2022. 00월까지 지방○○○급 ○○○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단법인 ○○○ 이사회에 00회, 총회에 00회에 직접 참여하여 사단법인 업무에 관여 중이고, 2021. 00월부터 2021. 00월까지 총 00회에 걸쳐 관내 출장 중 사단법인 ○○○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적인 일을 하면서 00만원의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였는데도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급 ○○○이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2021. 00월부터 2022. 00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단법인 ○○○의 이사로 겸직하고 사단법인 ○○○ 총회에 00회 직접 참여하여 사단법인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복무 관리에 솔선 수범하고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서장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공무 외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출장여비도 부정 수령하는 등의 복무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겸직허가 위반 혐의자에 대한 대처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광양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 및 부서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노인장애인과)는 2021. 00월 중순경 사단법인 ○○○의 산하 시설인 ○○○○○○장이 대표자를 ○○○로 변경하고자 문의하였을 때 ○○○의 겸직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감사실장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2021. 00. 00. ○○○○○○○○○에서 대표자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 ○○○의 겸직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감사실장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2. 00. 00. ○○○가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여 ○○○○○○○○○○의 대표자 변경을 독촉하였을 때에도 ○○○의 겸직규정 위반 사실을 감사실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가 공무 외 사적인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지방○○○급 ○○○는 2022. 00. 00. 광양시 종합감사장에서 문답을 진행할 당시 사단법인 ○○○ 대표이사 사망 후 임원진들이 나이가 많아 법인 운영이 어렵다고 집사람이 호소하며 부탁을 하였기에 겸직 위반인지 모르고 사단법인 ○○○의 이사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급 ○○○도 2022. 00. 00. 광양시 수시감사장에서 문답을 진행할 당시 지방○○○급 ○○○가 사단법인이므로 문제가 없다며 부탁을 하였기에 겸직 위반인지 모르고 사단법인 ○○○의 이사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급 ○○○와 지방○○○○○급 ○○○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자들로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지방○○○급 ○○○의 경우는 사적인 일을 하였으면서도 00만원의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광양시는 ○○○○○○○○○○의 대표자 변경 시 사단법인 ○○○의 등기부등본에 ○○○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겸직허가를 득하였다고 판

단하여 감사실장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장이 대표자 변경을 문의할 시 이미 노인장애인 과내에서 ○○○의 겸직 금지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대표자 변경이 불가함을 내부 검토하였으며, ○○○○○과장도 경위서에서 「광양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점이 있어 위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겸직하고, 출장 중 사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출장비를 지급받은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 위배 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직하면서 출장 중 사적인 일을 수행하고 출장비를 지급 받은 지방○○○○○ ○○○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이사를 겸직한 지방○○○○○○○○ ○○○과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를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지방○○○○○○○○ ○○○를 훈계하며(훈계)
- ③ 지방○○○○○ ○○○가 부정 수령한 여비 00만원과 가산금 00만원을 징수하고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겸직허가 절차와 직무관련 고발규정에 대해 교육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통보(시정완료)·시정요구

제 목 토석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허가과, 산림소득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토석채취 등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비 예치 및 불법산지전용 관련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토석채취허가지 복구비 과다 부과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마다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하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림청은 해마다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고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복구비는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면적에서 완충구역¹⁾ 면적을 제외한 산지면적에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에게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마다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예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허가과)는 2016. 00. 00. 자로 광양○○○○○○○○조성공사 성토용 목적으로 (주)○○○건설 등 2개 사에 광양시 ○○동 산00번지 외 00필지에 토석채취허가를 승인한 건에 대하여 2020. 11월부터 2022. 4월까지 [표 1]과 같이 3차례에 걸쳐 복구비를 재산정하면서 복구비 산출면적에는 완충구역 면적 16,021㎡를 제외한 49,239㎡를 복구비 산출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전체면적인 65,260㎡로 적용·산출한 후 (주)○○○건설 등 2개 사에 복구비를 추가 예치통보한 결과 복구비 781,814천원을 과다 부과 하였다.

[표 1] 토석채취허가 관련 복구비 과다 부과 현황(2020.11월~2022.4월)

(단위 : ㎡, 천원)

허가대상자	허가기간	허가면적	부과연도	복구비 산정내역			
				적용 산지면적	당초 산정액 (A)	완충구역 제외 산정액 (B)	과다 산정액 (C=A-B)
(주)○○○건설 ○○기업(주)	2016.00.00. ~ 2023.00.00.	65,260 (완충구역 16,021)	2019년까지	49,239	2,008,487	2,008,487	정상부과
			2020.11.27.	65,260	2,926,831	2,208,174	781,814 (과다부과)
			2021.12.20.	65,260	3,141,388	2,405,124	
			2022.04.14.	65,260	3,186,938	2,405,124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1) 「산지관리법 시행령」 [표 8] 제1호 가목에 따른 채취 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 내의 구역

그로 인하여 광양시의 복구비 면적산정 착오로 (주)○○○건설 등 2개 사에게 복구비 781,814천원이 과다 부과되어 허가대상자의 부담 과중과 행정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불법산지전용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 허가권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없이 산지를 전용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산지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복구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준공검사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없이 산지를 전용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고,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산림소득과)는 2020. 12월부터 2022. 6월까지 [표 2]와 같이 광양시 ○○면 ○○리 산00-0번지 등 5건의 불법산지전용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여 복구준공검사 후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하자보수보증금 5,734천원을 예치하지 않은 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불법산지전용 등 산지관리법 위반사항 처리현황(2020.12월~2022.6월)

(단위 : m², 천원)

불법산지전용 현황			처리현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현황	
대상지	행위자	훼손면적	사법 처리일	원상 복구일	복구 공사비	예치금액 (복구공사비 *0.04%)	예치여부 (여, 부)
계		18,118			143,359	5,734	
○○면 ○○리 산00-0 등	○○○	1,897	2020.00.00.	2020.00.00.	29,400	1,176	부
○○면 ○○리 산00-0 등	○○○	5,619	2021.00.00.	2021.00.00.	28,283	1,131	부
○○면 ○○리 산0	○○○	5,632	2021.00.00.	2021.00.00.	56,000	2,240	부
○○면 ○○리 산000-0	○○○	3,809	2022.00.00.	2022.00.00.	22,000	880	부
○○면 ○○리 산00-00 등	○○○	1,161	2022.00.00.	2022.00.00.	7,676	307	부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복구준공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100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① (주)○○○건설 등 2개 사에 복구비 781,814천원을 과다 부과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주)○○○건설 등 2개 사에 반환 조치하였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② 광양시 ○○명 ○○리 산00-0번지 등 5건의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 5,734천원을 예치하도록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도시공원 무단점용자에 대한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공원과)

훈 계 대 상 자 ①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② 광양시 ○○과 지방○○서기보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공원 158개소(521ha)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2.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도시공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지방○○서기보 ○○○은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도시공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지에 대한 원상회복 업무 태만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에게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점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공원과)는 광양시 ○동 0000번지 공원부지 내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2021. 00. 0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2022. 00. 00.까지 무단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원상회복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독촉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표 1]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시설 원상회복 등 조치 현황

(단위 : m²)

대상지	지목	토지면적	무단점용시설 현황			행정적 조치사항	
			행위자	면적	무단점용 내용	원상회복명령	현재까지 상황
광양시 ○동 0000	공원	000	○○○	00.00	시설물 설치 (○○○○○ 활용 목적 콘크리트 포장)	2021.00.00. (행위는 2021. 00월경)	원상회복되지 않은 채 행위자가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 중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도시공원 시설의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위자 행정처분 해태로 무단점용 행위가 지속되어 행정 신뢰도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5조 [별표 5]에 따르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로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며,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 행위자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공원과)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에게 2021. 00. 00. 도시공원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만 한 채 [표 2]와 같이 2021. 1월부터 2022. 9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2,265,610원의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산정 현황(2021. 1월~2022. 9월)

(단위 : m², %, 원)

대상재산	점유 면적 (A)	㎡당 재산가액 (B)	회계 연도별	대부료 산출액			변상금 산출액 (E*120%) *원 단위 절삭	변상금 부과여부
				대부요율 (C)	점용기간 (D)	대부료 산출 [E=(A*B)*C*D] (점용기간별 산정) *원 단위 절삭		
계						1,888,010	2,265,610	
광양시 ○동 0000	00.00	346,500	2021년	0.05	2021년 (12개월)	1,063,400	1,276,080	부
		372,900	2022년	0.05	2022년 (9개월)	824,610	989,530	부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지 원상회복 및 행위자 과태료 부과 등 도시공원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주사 ○○○과 지방○○서기보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도시공원 내 무단점용지 원상회복 및 변상금 2,265,610원을 ‘○○○’에게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숲길 조성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산림소득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정비를 위하여 1,724백만원의 보조금으로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하였다.

2. 숲길 조성에 따른 노선의 지정·고시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숲길을 조성할 시 노선선정·조성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산림소득과)는 2019. 11월부터 2020. 8월까지 2019년 ○○산 ○○길 조성사업(0코스) 등 [표]와 같이 2건의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의 신규 및 변경이 있었는데도 숲길 노선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숲길 노선 지정·고시 현황(2019.11월~2020.8월)

(단위 : km,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자	사업기간	노선 지정·고시 여부
계	2건	52	343	2개 업체		
1	2019년 ○○산 ○○길 조성사업(추가)	28	120	○○○○(주)	2019.00.00.~2019.00.00.	부
2	2020년 ○○산 ○○길 조성사업(0코스)	24	223	○○○○(주)	2020.00.00.~2020.00.00.	부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숲길의 지정·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숲길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려고 한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숲길 실태조사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지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하고,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숲길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숲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숲길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산림소득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숲길 실태조사

대상인 ○○봉 ○○로 0코스(○○~○○~○○○~○○) 등 17개 노선(188.9km)에 대하여 단 한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숲길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앞으로 숲길 노선 지정·고시 절차 준수 및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세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년부터 2022. 8월까지 [표 1]과 같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현황(2019~2022. 8월)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9년	291,570	282,013	979	8,578
2020년	289,137	279,422	961	8,754
2021년	314,087	303,389	776	9,922
2022년	359,151	315,883	108	43,161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역주택조합입주권 등 취득세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¹⁾ 및 제10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²⁾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1) 제8항 :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지역주택조합입주권 거래내역 및 가설건축물 신고대장 등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검토하여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세정과)는 2019년부터 2022. 8월까지 [표 2] 및 [별표 1] “취득세 미부과 세부 명세”와 같이 조합입주권 취득 6건에 대한 취득세 6,992천원 및 지목변경, 체비지,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세원관리 소홀 40건에 대한 취득세 42,749천원 등 총 46건에 대한 취득세 49,741천원을 부과하지 않아 공정한 과세원칙이 저해되고 지방세수 확보 기회가 상실되게 하였다.

[표 2] 지역주택조합입주권 등 취득세 미부과 현황(2019~2022.8월)

(단위: 건, 천원)

세 목	부과대상	건수	미부과 세액
		46	49,741
취득세	지역주택조합입주권 취득세 추징	6	6,992
	지목변경 취득세 추징	2	2,098
	체비지 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징	1	2,673
	무허가건물 취득세 추징	26	19,963
	가설건축물 미신고 추징	11	18,015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가산세 포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24조와 같은 법 제35조에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면허를 발급받는 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지하수 굴착행위의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세정과)는 2019년부터 2022. 8월까지 [표 3] 및 [별표 2] “등록면허세 미부과 세부명세”와 같이 지하수 굴착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총 127건에 대한 취득세 910천원을 부과하지 않아 공정한 과세원칙을 저해하였다.

[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등록면허세 미부과 현황(2019~2022. 8월)

(단위: 건, 천원)

세 목	부과대상	건수	미부과 세액
		127	910
등록면허세	개인하수처리시설 추정	116	616
	지하수 굴착신고 추정	11	294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가산세 포함)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부과 누락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173건 50,651천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지방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징수과, 도로과, 허가과, 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도로법」 등에 따라 점용료,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2조 및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로과)는 광양시 ○○동 000-0(대지, 000㎡)를 [표]와 같이 ○○○가 대부계약도 없이 2008년부터 2022. 8월까지 무단점유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여 도로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4,351천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표]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 산출 현황

(단위: 원, ㎡)

대상물건	점유자명	점유면적	회계연도	변상금 미부과액
계				4,351,830
광양시 ○○동 000-0	○○○	000	2018	728,170
			2019	822,680
			2020	867,790
			2021	930,080
			2022	1,003,110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 허가를 받는 자는 점용료 부과액의 100분의 5,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면적 ㎡당 1,500원 내지 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 허가 및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시 허가를 받는 자에게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로과, 허가과)는 2020. 00. 00. ○○○○공사에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지역개발공채 490천원을 매입하도록 하지 않는 등 2019. 12월부터

2022. 7월까지 [별표 1] “지역개발공채 징구 누락 명세”와 같이 13건 43,613천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의 주민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사망자에 대한 체납자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97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제2항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 정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지방세외수입을 부과하기 전에는 납세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추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리보류된 지방세에 대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소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징수과, 교통과, 도로과)는 2015. 2월부터 2021. 6월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2005. 00. 00. 사망한 ○○○에게 2015. 00. 00. 주정차위반과태료 70천원을 부과하는 등 [별표 2]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중 사망자 명세”와 같이 8건 513천원을 사망자에게 잘못 부과하여 체납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으로 되어 있는데도 2022. 8월까지 부과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징수과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 등 사망자 26건, 2,387천원에 대하여 시효완성 정리를 추진하지 않고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사망자에 대한 부과자료 34건 2,900천원이 방치되어 체납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부과 누락된 변상금 4,351천원을 부과하고, 지역개발공채 43,613천원을 징구하며, 사망자에게 부과한 8건 513천원은 부과 취소하고, 징수권이 소멸된 26건 2,387천원은 시효완성 정리를 하며(시정)
- ②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지역개발공채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철강항만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20년부터 2022. 8월까지 테마형 복합수산물 공간 조성으로 수산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 ○○○○○○센터 1)”를 준공하여 수산물센터, 판매장, 식당, 편의점, 카페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수영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²⁾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위치/규모 : 광양시 ○동 0000-0번지(○○동 일반부두 앞) /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0,000㎡
주요시설 : 수산물센터, 냉동/냉장창고, 위판장, 수산물식당, 건어물판매장, 사무실, 회의실, 푸드코트, 전망라운지, 편의점, 카페 등

2)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 ○○○○○○센터의 공유재산 시설투자비에 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신고하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할 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철강항만과)는 2020년부터 2022. 8월까지 수산물센터, 식당, 카페 등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 ○○○○○○센터에 대하여 [표]와 같이 10,921,349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992,849천원을 관할 세무서에 2022. 8월까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였다.

[표]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공사명)	공사 기간	공사 시설비(매입액)			관리부서
		총 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대상)	
○○○ ○○○○○○센터	2020~2022년 (2년)	10,921,349,930	9,928,499,937	992,849,993	철강항만과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센터 건립 관련 지출한 공사시설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992,849천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철강항만과)

내 용

1. 업무 개요

광양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어선의 항·포구 안전접안과 어업인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15개소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

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이 완료된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연도 내에 세입고지서를 발급 요청하여 그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철강항만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와 같이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17,887,200원과 이자액 9,525,090원 등 총 27,412,290원을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

[표]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사업비 잔액 등 미반납 현황

(단위 : 원)

연번	연도	반납액			국비 반납			도비 반납		
		계	사업비	이자	소계	사업비	이자	소계	사업비	이자
계		27,412,290	17,887,200	9,525,090	11,608,950	6,890,400	4,718,550	15,803,340	10,996,800	4,806,540
1	2018	8,090,550	3,372,000	4,718,550	8,090,550	3,372,000	4,718,550	-		
2	2019	6,850,010	3,518,400	3,331,610	3,518,400	3,518,400		3,331,610		3,331,610
3	2020	12,471,730	10,996,800	1,474,930	-			12,471,730	10,996,800	1,474,930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세입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누락되어 어업 활성화 사업에 재 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890,400원과 이자액 4,718,550원 총 11,608,950원을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996,800원과 이자액 4,806,540원 총 15,803,340원을 전라남도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광양시○○회 보조금 지원·관리 및 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체육과)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년부터 2022. 8월까지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 ○○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양시○○회 등에 4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중이며, ○○○○○○ 및 ○○○○○○ 등 6개 체육시설에 대해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중이다.

지방○○주사 ○○○은 2019.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광양시○○회·○○○○○○회 사무국장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법정운영비보조금 지원 업무를 포함한 ○○○○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광양시○○회·○○○○○○회 사무국장 활동비 보조금 지원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1)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

1)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삭제 →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다)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와 같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에 관한 해석기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지원하여야 하고,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전자문서시스템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

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체육과)는 2019년부터 2022. 8월까지 광양시○○회와 광양시○○○○회에서 [표 1]과 같이 사무국장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활동비 65,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전자문서시스템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 광양시○○회 정산검사 결과 및 2019년부터 2021년 정산검사 결과²⁾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 생산등록번호 부여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표 1] 광양시○○회·광양시○○○○회 사무국장 활동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보조사업자	대상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8월까지
계		65,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11,000,000
광양시○○회	○○○	44,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8,000,000
광양시○○○○회	○○○	21,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3,000,000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는 활동비 65,000,000원이 부당 지원되는 결과와 부적정한 공문서 관리로 문서의 분실 및 위조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3. 광양시○○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2) ① 광양시○○회 법정운영비 2019년 광양시 정산결과 생산·등록된 문서는 없음

② 2020년도 광양시○○회 보조사업 정산 결과 통보 및 잔액 반납 요청 ○○과-000(2020.00.00.)

③ 2021년도 광양시○○회 13개 보조사업 정산 결과 통보 및 잔액 반납 요청 ○○과-000(202201.00.)

④ 광양시○○○○회 법정운영비 2019년, 2020년, 2021년 광양시의 정산결과 생산·등록된 문서는 없음

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이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4.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사회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등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광양시○○회 법정운영비 보조금 교부조건」 제7호 사목에 따르면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투명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에 따라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체육과)는 광양시○○회에서 ○○○○○○○장 ○○○에게 2019년부터 2022. 8월까지 [별표 1] “광양시○○회 ○○○○○○○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총 31,5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 ○○료로 7,725,440원을 지급하였고 ○○○○금으로 3,583,19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1,370원은 ○○○ ○○○○에 입금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였는에도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31,500,000원의 지방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체육시설 위탁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광양시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경쟁에 따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수탁자로부터 위탁 체육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 및 그 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체육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 등 6개 체육시설을 ○○○ 등에 위탁하면서 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해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2] “위탁관리 체육시설 보험·공제 가입 부적정 명세”와 같이 시 예산 43,443,280원을 투입하여 영조물손해배상보험과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를 가입하여 43,443,280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회계관계직원이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말하며,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광양시○○회에 지원된 보조금의 세입·세출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책임한계를 확보하기 위해 회계관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무관, 지출원 등 회계관직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재정보증을 가입한 후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체육과)는 2019년부터 2022. 8월까지 [표 2]와 같이 광양시○○회가 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 등 회계관직을 지정하지 않고 3,780,643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양시○○회 ○장 ○○○, 1국 ○○○장 ○○○, 2국 ○○○장 ○○○은 재정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1국 ○○○장 ○○○, ○○○사 ○○○, 2국 ○○○장 ○○○은 2022.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재정보험에 가입한 채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광양시○○회 사무국 회계관직 지정·운영 및 재정보증 미가입 현황(2019~2022. 8월)

명칭	직급(직위)		성명	담당업무	회계관직 지정여부	재정보증 가입여부	보조금 지원 (2019~2022)
광양시 ○○회	○장		○○○	총괄	부	부	3,780,643천원
	1국	○○○장	○○○	전문체육부 업무 전반 총괄	부	부	
		○○○장	○○○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등	부	가입 (2022.00.00.~ 2022.00.00.)	
		○○○사	○○○	사무국 운영비 집행 등	부	가입 (2022.00.00.~ 2022.00.00.)	
	2국	○○○장	○○○	생활체육 육성 운영 총괄	부	부	
		○○○장	○○○	국비보조사업 운영 등	부	가입 (2022.00.00.~ 2022.00.00.)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광양시○○회와 광양시○○○○○○회 사무국장 활동비 65,000,000원과 업무추진비 31,500,000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광양시○○회 사무국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20,191,370원은 반환받아 세입처리하시기 바람(**시정**)
- ③ 앞으로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지급 사례와 위탁 체육시설에 대하여 광양시에서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진상면)

내 용

1. 업무 개요

광양시는 민원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청을 하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 및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등의 확인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새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울시스템 등을 조회하여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가 기소유 면적의 합한 면적을 확인하여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진상면)는 2020. 6월부터 2022. 3월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시 ○○○○길 00, 000동 0000호에 거주하는 ○○○은 1,000㎡를 초과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광양시 ○○읍 ○○리 000-00번지 205㎡와 광양시 ○○읍 ○○리 000번지 987㎡ 등 총 1,192㎡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는 등 [별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1,000㎡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명세”와 같이 11세대가 소유 상한 면적 1,000㎡ 초과하는데도 34필지 17,096㎡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하게 발급하여 주었다.

그로 인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농지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11세대가 취득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 후 휴경 등으로 농업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청문을 거친 후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통보(시정완료)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산단과, 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영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광양○○○○ ○○○지구 조성사업(0차) 등 2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액 158,181천원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연배상금 부과 업무 추진 시 과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전라남도

기관경고·훈계·주의요구

제 목 민간위탁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정보통신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아동친화도시과, 생활폐기물과)

훈 계 대 상 자 ①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②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③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④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⑤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⑥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⑦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⑧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⑨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⑩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⑪ 광양시 ○○○○○과 지방○○○○○○○○ ○○○

⑫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⑬ 광양시 ○○○○과 지방○○○○○○ ○○○

⑭ 광양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복지관 운영’ 등 31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는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2.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주사 ○○○는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 ○○

시설'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2.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 ○○시설' 민간 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 청소' 민간위탁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 청소'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 ○○○○ 지원'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 ○○○○ ○ 지원'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19.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복지관 운영' 및 '○○○○○클럽 운영'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사업' 및 '광양시○○○○○○ ○○센터'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사업' 및 '광양시○○○○○○ ○○센터'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 ○○○은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센터'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센터' 민간위탁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민간위탁사업 계약 체결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광양시 민간위탁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은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의 목적, 수탁기관 명칭 등을 포함하여 계약¹⁾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 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광양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

1) 계약 체결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①민간위탁 목적, ②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③민간위탁 사무의 명칭·범위 및 내용, ④민간위탁 기간 및 조건, ⑤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용, ⑥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⑦이용자·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⑧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⑨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정보통신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교통과, 아동친화도시과, 자원순환과)는 2019. 8월부터 2022. 8월까지 「광양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1] “민간위탁사업 계약 미체결 명세”와 같이 48건의 위탁사무 계약을 문서로만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계약서로 체결된 채 48건 46,625,301천원의 위탁사업비가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계약보증금 납부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영 제37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민간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받거나 보

증서 등을 제출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교통과, 아동친화도시과, 정보통신과)는 2019. 8월부터 2022. 8월까지 [별표 2] “민간위탁사업 지급보증서 미발급 명세”와 같이 43건의 민간위탁 사업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민간위탁사업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채 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21,734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신속집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른 선금급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금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비 등²⁾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2)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운임 및 사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입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보수지급일에 전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에 따르면 선금지급 대상은 공사, 물품 제조 및 용역계약이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 상·하반기 5차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시달하면서 선금급 집행을 활성화하되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광양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민간위탁금의 집행을 할 때는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체육과, 생활폐기물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도시과)는 2020. 3월부터 2022. 6월까지 민간위탁사업비는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별표 3] “민간위탁사업비 선금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신속집행을 사유로 64건 33,795,419천원의 민간위탁사업비를 선금급 명목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도 제출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그로 인하여 광양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허위성적으로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0백만원 및 행정안전부 장관·도지사 표창을 수요받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선금급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지 않아 사업자 부도 등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 선금급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① 민간위탁사업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하고,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사업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받도록 하며,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기관경고)

②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방회계법」상 선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신속집행 실적을 위해 선금을 지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을 훈계하며(훈계)

③ 앞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은 후 사업을 실시하며 「지방회계법」을 준수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 라 남 도

기관경고·훈계·주의·개선요구

제 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하수도과)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 ○○○

광양시 ○○○과 지방○○주사 ○○○

광양시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개별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공공하수도시설로 유입하거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은 2022.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는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방○○서기 ○○○는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

라고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2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도시개발사업¹⁾, 산업단지 조성사업²⁾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제2항 2호 및 제4항에 따르면 하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같은 조례 제18조 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표 1]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광양시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및 연도별 단위 단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5])	
○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전년도(직전년도)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차량운반구와 공기구비품은 제외)의 순액으로 한다.(순액 = 비유동자산 - 감가상각비 총액)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자료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발췌

아울러 같은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 또는 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하는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다른 재난 위기를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시장이 지정한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³⁾으로 정한 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광양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연도별 산정된 단위 단가(2020년 4,841,001원/㎥, 2021년 5,172,494원/㎥, 2022년 5,410,129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도내 시·군 평균단가 조정한다는 사유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단위 단가의 약 40%인 2,127,700원/㎥로 결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였다.

따라서 광양시는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표 2]와 같이 개별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단가를 결정하여 고시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규정된 감면조항이 없으므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5]의 산정방식대로 산정된 단위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표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현황

(단위 : 원/㎥)

연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개별건축물(공고 단가)	개발사업(조례 산정 단가)
2020년	2,127,700	4,841,001
2021년	2,127,700	5,172,494
2022년	2,127,700	5,410,129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3)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사용료 등 감면)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가설건축물 등의 개별 건축물에 대한 감면만 규정하고 있으며 타행위에 대한 감면 조항은 없음

그런데 광양시(하수과)는 2014. 5. 23.부터 2022. 5. 16.까지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표 2]의 개발사업(조례 산정 단가)대로 연도별 단위 단가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인 2,127,700원/m³를 적용하여 [별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류 명세”와 같이 ○○○○지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적게는 2,328,519천원부터 많게는 4,464,984천원까지 총 10,617,126천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광양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에 투입된 금액 중 10,617,126천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광양시는 「하수도법」 제61조에 타행위에 대한 부담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부산정기준이나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재량행위를 인정한 사항이며, 도내 모든 시·군이 개별건축물과 동일하게 타행위를 감면 한 사례와 인근 지자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재권자 광양시장의 결재를 받아 타행위 부담금 단위 단가를 결정·고시한 것으로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르면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양시 하수도 조례」 제20조에 단위 단가를 개별건축물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조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장 결재만으로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결정·고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은 2008년에 폐지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산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고하여 부과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여야 했는데도 시장 결재만으로 단위 단가를 결정하여 10,617,126천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기에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광양시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고하여 단위 단가를 과소 산정하여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기관경고)
- ② 감사 대상 기간 중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 관련 총괄책임자 지방○○○○○ ○○○, 지방○○주사 ○○○, 지방○○서기 ○○○를 훈계하며(훈계)
- ③ 앞으로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대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④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단위 단가를 감면하려면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를 개정 한 후 감면된 금액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개선)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기계식주차장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교통과)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실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 등 대상으로 기계식주차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관리 업무 태만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따르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총 5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9조의23에 제1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관리대장 위반내용 기재를 위한 건축부서 통보를 하여 기계식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정밀안전검사 대상 시기가 도래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정밀안전검사 수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한편 광양시는 전라남도(도로교통과)로부터 2019. 00. 00. 광양시 ○○○○로 000 ○○빌딩의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 되어 2019. 00. 00.로부터 정밀안전검사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교통과)는 2019. 8월부터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광양

시 ○○○○로 000 ○○빌딩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이 장기간 고장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는데도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도로교통과)가 2019. 00. 00. 기계식주차장 안전성 강화 조치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대상에 대해 조속히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지시¹⁾하였는데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미 실시 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도로교통과)가 2020. 00. 00.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적 특별점검²⁾ 통보에 따른 광양시의 점검결과 보고에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철거 계획 중’으로 작성 보고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광양시 종합감사 개시 이후 인 2022. 00. 00.³⁾에서야 기계식주차장 사용중지명령과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물로 보아 다른 법령의 영업, 허가·면허·인가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축부서로 통보하는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를 태만이 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9. 00월부터 2022. 00월까지 ○○빌딩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3년간까지 부설주차장 확보를 면제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정밀안전검사 미이행 기계식주차장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23에 제1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의23 제1항 후단에 따

1) 기계식주차장 안정성 강화 조치 지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00000(2019.00.00.)

2) 기계식주차장 특별점검계획 통보, 전라남도 도로교통과-00000(2020.00.00.)

3) 광양시 교통과 - 00000(2022. 00. 00.)

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의견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정밀안전검사 미이행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여야 하고, 의견진술 기회 기간 감경된 과태료 납부시 징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미납 시에는 감경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교통과)는 2020. 00. 0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을 100분의 20을 감경한 40만원으로 부과하였으나, 부과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2. 00. 00.까지 당사자가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정상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체납처분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①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기계식주차장 업무 담당자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상복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밀안전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통보

제 목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자원순환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20. 1월부터 2021. 12월까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인허가·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및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표 1]과 같이 처리용량, 등급, 지역에 따라 1~4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점검 횟수 현황

(단위 : 횟수)

등 급	지 역		수변·특정지역	기타지역
	우수관리	1.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2. 처리용량 50m ³ /일 미만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2m ³ /일 초과, 단, 수변·특대지역은 1m ³ /일 이상 등)	일반관리	1.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2. 처리용량 50m ³ /일 미만	2 1	1 1
	중점관리	1.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2. 처리용량 50m ³ /일 미만	4 2	2 2

자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 발췌

따라서 광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 등급, 처리용량에 맞는 횟수에 따라 정기지도·점검을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비정상 가동 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대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자원순환과)는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관내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4,134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했는데도 [표 2]와 같이 2020년 31개소, 2021년 3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점검률이 1.6%에 불과하고, 50m³/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회(2020년 3회, 2021년 3회)에 그치는 등 점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지도·점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2]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2020~2021년)

(단위 : 개)

연도	시설용량(㎥/일)	설치 운영 현황		시설용량별		점검결과	
		개소수	비율(%)	용량합계	비율(%)	점검	비율(%)
계		4,134		87,708		68	1.6
2020년	소 합계	2,037	100	43,479	100	31	2
	50 이상	58	3	21,054	48	3	5
	40 이상 ~ 50 미만	56	3	2,520	6	28	1
	30 이상 ~ 40 미만	84	4	2,940	7		
	20 이상 ~ 30 미만	164	8	4,100	10		
	10 이상 ~ 20 미만	449	22	6,735	15		
	10 미만	1,226	60	6,130	14		
2021년	소 합계	2,097	100	44,229	100	37	2
	50 이상	58	3	21,054	48	3	5
	40 이상 ~ 50 미만	59	3	2,655	6	34	2
	30 이상 ~ 40 미만	88	4	3,080	7		
	20 이상 ~ 30 미만	168	8	4,200	9		
	10 이상 ~ 20 미만	462	22	6,930	16		
	10 미만	1,262	60	6,310	14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국민건강 및 공공수역의 위해를 끼칠 우려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시설용량 50㎥/일 이상은 59개소로 전체(2,134개소)의 3%에 불과하나, 시설용량 합산 시 전체의 48%를 처리하므로 대용량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통보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총무과, 안전총괄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2022. 2. 17.부터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2. 전담 조직 미구성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지원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수를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¹⁾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1)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으로 다수인의 결합체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안전관리자 등 수를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2명 이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총무과)는 안전관리자 등 수를 합산하면 총 3명이고, 상시근로

자 수가 2,284명인 사업장이므로 2명 이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총괄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도시국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이 작성되지 않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다만 광양시(안전총괄과)는 2022. 00. 00. 수립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실행계획’의 전담 조직 구성안을 통해 전담조직(팀) 별도 신설 시까지 기존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에서 수행한다하였고, 2022. 00. 00. ‘2022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부서별 행정 수요 의견서 제출’ 공문을 총무과에 통보하여 중대재해팀 5명(행정 6급 등)의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총무과는 감사 기간 중인 2022. 00. 0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재해팀 신설 검토(안)’을 시장에게 결재를 득한 상태이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

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총무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제안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2021. .00. 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하였으나 분기마다 정기회를 개최·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운영되지 않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다만 광양시(총무과)는 이번 감사기간(2022. 9. 13.~9. 26.) 중 위 건이 감사에 지적되자 2022. 00. 00. 광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결재는 득한 상태이다.

4.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및 종사자 안전 대책 기준 미수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중

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및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안전총괄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건설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재해발생 초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할 우려를 초

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등 대응조치와 구호 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매뉴얼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 도로 무단점용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도시재생과)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7. 10. 1.부터 2023. 9. 30.까지 [표 1]과 같이 전라남도 ○○○○협회 ○○○지부(지부장 ○○○)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85개소 116기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광양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현황

구분	위탁시기	위탁기간	수탁자 (대표자)	비고
계	2회	6년		
1	2017. 10. 01.~2020. 09. 30.	3년	전라남도 ○○○○협회 ○○○지부	
2	2020. 10. 01.~2023. 09. 30.	3년	전라남도 ○○○○협회 ○○○지부	85개소 116기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현수막 지정 게 시대에 현수막 게첩 시 도로 점용 허가 수수료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도로점용 허가 없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시설 도로 무단점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¹⁾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²⁾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는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갯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시재생과)는 2005년부터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1] “광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 미허가 설치 명세”와 같이 광양시 ○동 000-0번지 등 22개소 28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면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였다.

그 결과 도로를 무단점용한 현수막으로 인하여 광양시 행정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하였다.

3.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첩 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미부과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10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2) 1.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 금액은 1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광양시 옥외광고 조례」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르면 광고물 중 현수막을 게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를 내야 하며, 「광양시 옥외광고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 게첩 시 현수막 게시시설(10m² 이하)의 광고물 등의 신고 수수료는 3,000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도로구역 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광고물 등의 신고를 득하도록 해야 하고, 현수막을 게첩할 신청인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1,000원)와 광고물 등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3,000원)를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시재생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업무를 전라남도 ○○○○협회 ○○○지부(지부장 ○○○)에 위탁하면서 광양시 도로구역 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첩 신청 접수 시 광고물 신고 수수료만 납부받도록 하였고,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1,000원은 납부받도록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2019. 11. 1.부터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구역 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게첩 신청 8,783건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8,783천원(8,783건×1,000원)의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미부과 현황

(단위 : 건, 원)

연도	신고 건수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미부과 금액
계	8,783	8,783,000
2019. 11. 01.~2019. 12. 31.	659	659,000
2020. 01. 01.~2020. 12. 31.	3,182	3,182,000
2021. 01. 01.~2021. 12. 31.	3,133	3,133,000
2022. 01. 01.~2022. 08. 31.	1,809	1,809,000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4.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업무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연장허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르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해당 광고물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조치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양시 옥외광고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표시기간 연장 신청 대상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게는 시정명령을 하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시재생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별표 2] “광양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표시기간이 만료된 108건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종료를 27회 안내하였는데도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게첩 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 ② 도로를 무단 점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22개소, 28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하지 않은 108건의 관리자 등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도시재생과, 도로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2,808개소, 54,874천㎡의 도시계획시설을 [표 1]과 같이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광양시 도시계획시설 현황(2018. 12월)

(단위 : 천㎡)

시 설 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 1.) 대상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808	54,874	2,342	40,685	466	14,189	239	10,484	109	6,602
도로	1,987	14,657	1,697	12,478	290	2,179	152	1,244	71	997
기타 교통시설 (주차장, 궤도 등)	224	12,780	177	12,663	47	117	14	33	3	7
공원	172	10,740	130	3,101	42	7,639	31	7,579	16	4,512
녹지	141	2,785	101	1,083	40	1,702	25	1,157	11	858
기타 공간시설 (광장, 공공공지)	106	3,580	84	2,274	22	1,306	6	169	3	144
유통 및 공급시설	29	597	25	473	4	124	2	42	2	42
공공문화체육시설	98	2,024	86	1,701	12	323	8	257	2	38
방재시설	31	5,148	24	5,125	7	23	1	4	1	4
보건위생시설	4	858	3	772	1	86	-	-	-	-
환경기초시설	16	1,705	15	1,015	1	690	-	-	-	-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상이한 사업 시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시장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능적 필요성, 입지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기준과 재원조달 가능성, 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적 기준 및 미집행 경과기간, 주민 민원 등의 정책적 기준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집행계획에 미포함된 사업 또는 우선순위가 낮은 장기 미집행 시설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한정적인 사업추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기 수립하여 공고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광양시는 2018. 12월 「국토계획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규모 등이 도시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표 3]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표 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2018. 12월)

(단위 : 억원)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별 단 계 별 집 행 계 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적 집행시설(2018~2025년)							
			소 계		1단계 (2018~2020년)		2~1단계 (2021~2022년)		2~2단계 (2023~2025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계	466	11,441	466	11,441	30	1,232	143	5,442	293	4,767
도로	290	4,603	290	4,603	14	460	89	2,137	187	2,005
주차장	45	159	45	159	9	33	3	11	33	115
궤도시설	1	2	1	2	-	-	-	-	1	2
자동차 정류장	1	115	1	115	1	115	-	-	-	-
광장	19	290	19	290	-	-	6	131	13	159
공원	42	2,587	42	2,587	3	544	19	1,906	20	137
녹지	40	1,692	40	1,692	-	-	23	1,111	17	582
유원지	1	789	1	789	-	-	-	-	1	789
공공공지	2	14	2	14	-	-	-	-	2	14
수도시설	2	39	2	39	1	37	1	2	-	-
시장	1	4	1	4	-	-	-	-	1	4
기타시설	1	66	1	66	-	-	-	-	1	66
학교	5	143	5	143	1	40	1	20	3	83
공공청사	2	20	2	20	-	-	-	-	2	20
문화시설	2	6	2	6	-	-	-	-	2	6
체육시설	1	40	1	40	-	-	-	-	1	40
기타시설	2	182	2	182	-	-	1	124	1	58
하천	6	20	6	20	1	3	-	-	5	18
유수지	1	3	1	3	-	-	-	-	1	3
종합 의료시설	1	168	1	168	-	-	-	-	1	168
폐기물 처리시설	1	499	1	499	-	-	-	-	1	499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시재생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별표 1] “1·2-1단계 집행계획(2018~2022년) 중 추진 및 미추진 사업(도로) 명세”와 같이 1·2-1단계 집행계획(2018~2022년)의 사업대상 103개소(2,597억원) 중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10개소(2,260억원)로 개소수 대비 9.7%만 이행한 상태이다.

또한 1·2-1단계 집행계획 중 대로2-11호선 등 93개소(336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별표 2] “단계별 집행계획에 미반영된 시설 집행 명세”와 같이 중로 0-000호선 등 3개소(70.4억원)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다.

그 결과 전문 엔지니어링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완료 공고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기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예상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에 따른 행정계획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하였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시·도지사¹⁾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

1)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됨

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광양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광양시장은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광양시장은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광양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2. 9. 13.~9. 26.) 중 [별표 3]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 32개소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광양시(도로과)는 국도0호선 ○○지구(대로0-0호선) 확·포장공사 1개소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지 않아 광양시장의 실시계획 인가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하지도 않았고, 도시계획도로 광양읍 ○○마을(소로0-000호선) 개설공사 등 3개소는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광양시보에 공사완료 공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또한 ○○@~○○간 도시계획도로(대로0-00호선) 개설공사 등 10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는 실시하였으나, 광양시보에 공사완료 공고를 게재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4.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 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상의 투자계획을 기초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분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기초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2. 9. 13.~9. 26.) 중 1·2-1단계에 집행계획(2018~2022년)인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 103개 사업(259,700백만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본 결과, 광양시(도로과)는 [별표 1] “1·2-1단계 집행계획(2018~2022년) 중 추진 및 미추진 사업(도로) 명세”와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2018. 12월)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광로 0-0호선 등 10개 사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대로 0-00호선 등 93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및 1·2-1단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선 투자되어야 할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추진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실효될 우려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재원확보의 한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이 지연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도시계획도로 공사 완료된 공사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시정)
- ②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통보

제 목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도로 유지·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도로과)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1]과 같이 총 1,889개 노선, 1,400km를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광양시 관리 도로 현황(2019. 11월~2022. 8월)

(단위 : km, %)

구 분	노선수	도로 연장			비 고 (포장률)
		계	포장	미포장	
계	1,889	1,400.4	784.3	616.1	
시 도	1,786	920.8	580.7	340.1	63.1
군 도	10	112.6	70.6	42.0	62.7
농어촌도로	93	367.0	133.0	234.0	36.2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 ○○○은 ○○과에서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2022.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시·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건설·관리계획에는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와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도로의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관할 시·군도의 관리청으로서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의 교통량 수요 도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건설·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에 대하여 시·군도 포장률과 건설·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1] “시·군별 도로관리 현황 및 계획수립 명세”와 같이 광양시 시·군도 포장률(63.0%)이 22개 시·군의 평균 시·군도 포장률(73.6%) 보다 낮았고, 1회 이상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목포시 등 16개 시·군으로 파악되었다.¹⁾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로과)는 2019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2019. 10. 17. ~ 10. 30.)에서 2014. 7. 15.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추진 소홀”로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고, 202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도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예산 확보²⁾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³⁾

1) 2021년 도로통계 연보(국토교통부) 및 전남도 도로교통과(시·군) 제출자료 참고

2) 2020년~2022년에 예산 편성 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됨

또한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 건설·관리계획 수립 없이 시장 공약사항과 시의원 건의,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인 “○○ ○○~○○ ○○간 군도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7건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2,250백만원)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최근 4년간(2019~2022년) 도로사업에 총 41,092백만원⁴⁾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3.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시·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시·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는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사업별 재원계획 등을 포함하여 시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관할 농어촌도로의 관리청으로서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의 도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포장율과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1] “시·군별 도로관리 현황 및 계획수립 명세”와 같이 광양시 농어촌도 포장률(36.2%)이 22개 시·군의 평균 포장률(50.1%) 보다 낮았고, 1회 이상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여수시 등 16개 시·군으로 파악

3) 2022년 추경 예산에 소요예산 6억원 중 1억원을 확보하여 2022. 9월 용역을 착수함('23년까지 관리계획 등 수립 예정)

4) 시·군도, 농어촌도로 예산(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 41,092백만원('19년 14,842, '20년 6,995, '21년 6,565, '22년 12,690)

되었다.⁵⁾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로과)는 2019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2019. 10. 17.~ 10. 30.)에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도로건설·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추진 소홀”로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는데도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건설이 아닌 무분별하게 도로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도로건설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정성이 훼손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4. 도로 유지·관리 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사업개요, 예산, 공종별 사업내용,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하며,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매년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광양시 도로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적정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광양시의 최근 4년간(2019~2022. 8월)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민원 발생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총 5,579건의 민원이 국민신문

5) 2021년 도로통계 연보(국토교통부) 및 전남도 도로교통과 자료 참고

고 등에 접수되었고, 특히 2022년에는 8월말 기준으로 1,275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은 도로 관리구간(L=1,400km)에 비해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⁶⁾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매년 최소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원활한 도로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 도로 유지·보수 관련 민원 발생 및 예산 현황(2019~2022. 8월)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8월	비 고
민원발생	5,579	1,248	1,648	1,408	1,275	포트홀,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등
유지관리 예산	3,906	1,390	840	676	1,000	교량 보수·보강비 제외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로과)는 2020년과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⁷⁾이 있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도로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연 2회 정기 보수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4년간(2019~2022. 9월) [별표 2] “도로 시설물 미정비 명세”와 같이 도로 노면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지 못한 민원은 45건⁸⁾으로 이 중 2020. 2. 27.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광양 ○동 ○○○○ 정비 요구” 민원을 포함하여 2021. 12월 이전에 발생한 민원 28건⁹⁾의 경우에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도로의 시설물 정비와 파손된 구간을 즉시 보수하지 못함으로써 교통안전 저해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6) km당 유지관리비(최근4년간 예산 기준) : (광양시) 1.3백만원, (도) 위임국도 44백만원, 지방도 14백만원

7) (2020년) 도로관리 대책 수립 - ○○○ 의원, (2021년) 법정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근본적 대책 강구 - ○○○ 의원

8) 총 보수 예산(예산) : 1,576백만원 소요 * 건당 5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

9) 보수 예산(예산) : 1,330백만원 소요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업무 총괄을 소홀히 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 수립과 정기 보수를 실시하고, 적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자전거도로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교통과, 도로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총 216.1km의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고, “○○읍 ○○시장 인근 주차장” 등 19개소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다.

2. 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공간 미확보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 중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등¹⁾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 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교통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1] 및 [별표 1]

1) 자동차 전용도로, 급경사지 등 자전거 이용이 곤란한 지역, 기계식 및 지하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명세”와 같이 노외 주차장 19개소를 조성하면서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외대상이 아닌데도 총 234대(자동차 주차대수 총 583대의 40%) 이상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

[표 1] 노외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현황(2019. 11월~2022. 8월)

(단위 : 대)

사 업 명	주차장 개소	주차면수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여부	기준 대수	확보 대수
○○읍 ○○시장 인근 주차환경개선공사 등 19개 사업	19	583	부	234	-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자전거도로 노선 고시 미이행 및 도로대장 작성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종점 등이 포함된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을 지정·고시하고,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시장·군수는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관리청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노선에 대하여 지정·고시하고,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로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노선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 지정·고시를 하지 않았으며 자전거

거도로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²⁾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선 현황을 파악하고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자전거도로 시설물 설치 기준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제12조에 따르면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7-2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노면표시는 기본구간에 100m 간격마다, 시·중점부 및 접속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의 경우 안전표지는 20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자전거도로 노면표시와 안전표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주어 시설물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로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2]와 같이 “○○지구 ○○개발사업” 등 2건의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노면표시와 안전표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지적사항)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철저 → (2020년) ○○○, ○○○ 의원, (2021년) ○○○, ○○○ 의원

[표 2] 사업지구 내 자전거도로 시설물 협의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업승인 협의일	자전거도로 연장(m)	자전거도로 협의 유무	추진현황	인수완료 여부
계	2건		9,628			
1	○○지구 ○○개발사업	2020.00.00.	5,326	무	완료	여
2	○○·○○지구 ○○개발사업	2022.00.00.	4,302	무	완료	여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자전거도로가 시설물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채로 관리·운영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안전표지 등의 시설물을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에는 [표 3]과 같이 34,95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3] 자전거도로 시설물 설치 비용 현황(2019. 11월~2022. 8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안전표지					노면표시				
	기준 (개소)	확 보		미확보		기준 면적 (㎡)	확 보		미확보	
		개소	금액	개소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217	66	27,766	151	34,659	308	292	3,589	16	299
○○·○○지구 ○○개발 사업	99	66	27,766	33	11,366	200	184	2,424	16	299
○○지구 ○○개발 사업	118	-	-	118	23,293	108	108	1,165	-	-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주어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고, 낙석·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장 유지관리 편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노면포장은 포장상태 유지를 위해 파손의 종류, 파손 정도를 파악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이 발견되면 가능한 빨리 보수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표지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 할 수 있게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노면표시는 자전거이용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노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광양시의 최근 4년간(2019~2022. 8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민원 발생 및 유지관리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총 272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전거도로 관리 구간(L=216.1km)에 비해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자전거도로 시설물이 점차 노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만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발생 및 유지관리 예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8월	비 고
민원발생	272	59	110	77	26	노면정비, 안전난간, 블라드 파손 등
유지관리 예산	280	100	50	60	70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로과)는 종합감사기간(2022. 9. 13.~9. 26.) 중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진] “자전거도로 시설물 파손 현황”과

같이 블라드, 데크 등 시설물 파손을 확인하였다.

[사진] 자전거도로 시설물 파손 현황

	
블라드 파손(광양읍 용강리 일원)	데크 파손(광양읍 초남리 일원)

또한 2020년과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³⁾과 국민신문고 등에 시설물 정비 요청 민원이 있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정비를 실시하지 않은 민원은 [별표 2] “자전거도로 미정비 명세”와 같이 28건⁴⁾이 확인되었고, 2019. 00. 00.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 자전거길 ○○○○○ 교체 요청” 민원의 경우에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① 앞으로 노외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 공간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3) (지적사항)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철저 → (2020년) ○○○, ○○○ 의원, (2021년) ○○○, ○○○ 의원

4) 총 보수 예산(예산) : 234백만원 소요 * 건당 1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

법률」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노선 고시와 도로대장 작성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주의)

②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시설물 현황 파악과 적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무단 사용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안전총괄과, 도로과)

훈 계 대 상 자 ① 광양시 ○○○○○과 지방○○○○○ ○○○

② 광양시 ○○과 지방○○○○○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도로이용자 편의 및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의 농경지, 가옥 등의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1]과 같이 국·공유지가 포함¹⁾된 도로·하천 등 총 1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1] 국·공유지가 포함된 도로·하천 등 공사 추진현황(2019. 11월 ~ 2022. 8월)

사업건수	도 로		하 천		기 타	
	사업내용	건수	사업내용	건수	사업내용	건수
12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6	소하천 정비	3	도시개발 등	3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 ○○○은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하천공사 담당 팀장으로, 지방○○○○○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도로공사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1) 사업의 특성상 국·공유지가 편입되는 도로, 하천, 도시개발 등의 사업 위주로 추진 현황을 파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허가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²⁾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³⁾을 듣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도로, 하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무상귀속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고, 의견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함(도로·공원·철도·수도 등)

3)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은 국토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봄

그런데 광양시(안전총괄과, 도로과)은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추진한 준공 도로·하천 등 12건의 공사 중 “지방도 000호선(○○) 확·포장공사” 등 5건에 대하여 [표 2] 및 [별표] “도로·하천 등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미협의 세부 명세”와 같이 국·공유지 122필지 76,096㎡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⁴⁾과의 사전 무상귀속에 대한 의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여 2022. 9. 26. 감사일 현재 최소 8개월에서 최대 5년 4개월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표 2] 도로·하천 등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미협의 현황(2019. 11월~2022. 8월)

(단위 : ㎡)

사업건수	국·공유지 편입 현황		협의 완료		미협의(5건)		무단 훼손 사용 기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12건	778	442,788	656	366,255	122	76,096	8개월 ~ 5년 4개월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국·공유재산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도로·하천 등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과 지방○○○○○○○○○○를 훈계하고(훈계)
- ②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관청 및 전라남도 등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계열회사 간 입찰참여 제한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회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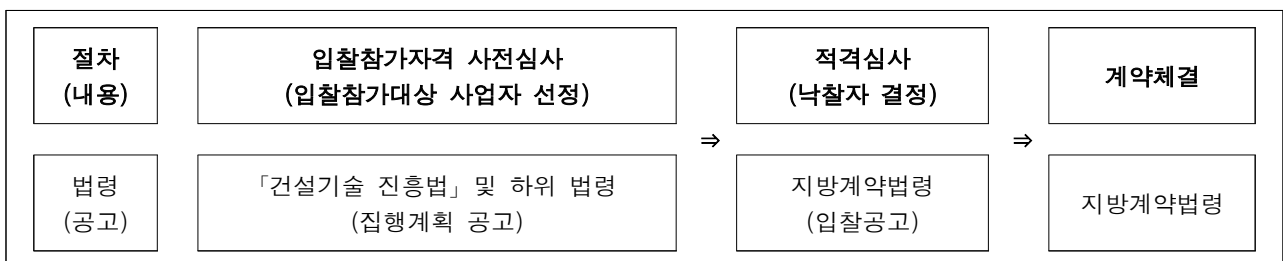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2.1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¹⁾ 32건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²⁾를 통해 입찰참가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절차



자료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내용 재구성

지방○○○ ○○○는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공고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7939호, '21. 3. 16.)으로 "건설기술용역"의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

2) PQ(Pre-Qualification) 부실 공사(용역)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전에 미리 공사(용역)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기초금액 2.1억원 이상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³⁾으로 인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명시(최소 40%, 최대 49%)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의무 비율 설정,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 계열회사의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공고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개별법령에서 별도로

3)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동계약과 관련한 지역업체 지원제도로써 공사현장에 소재한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도록 하는 제도(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81페이지)

제한하는 사항은 제외)하거나 공동수급체 간 지역업체 참여 의무 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회계과)은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별표]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계열사 참여 제한 부적정 명세”와 같이 공사계약이 아닌 총 32건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위한 집행계획을 공고하면서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17건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중 “공동도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간 구성은 불가”하다고 명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그로 인하여 17건의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입찰 공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동도급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과도하게 제한한 지방○○○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 계 요 구

제 목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안전총괄과, 도로과)

훈 계 대 상 자 ①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② 광양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면표시가 포함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2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업무 담당자로, 지방○○주사 ○○○은 2019.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¹⁾를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과 국토교통부 고시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5. 9. 2.) 11-2 노면표시 편에 따르면 노면표시 반사 성능²⁾(이하 “휘도”라 한다) 기준은 [표]와 같이 백색 노면표시는 240mcd/(m²·lx)이상, 황색 노면표시는 150mcd/(m²·lx) 이상 등이 충족하도록 되어 있고, 휘도 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노면표시의 휘도 기준

(단위 : mcd/(m²·lx))

조사각	관측각	구분	최소 반사성능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05°	설치 시 ³⁾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 시	100	70	40	권장

자료 :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5. 9.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1호) 재구성

아울러 노면표시가 포함된 공사의 계약업체는 최소한 휘도 기준을 충족하게 노면표시를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휘도를 측정하여 검사성적서를 발주청의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공사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

1)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을 말하며, 구분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함

2)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가와 관련된 빛의 양으로서 빛이 특정한 방향의 입체각을 통과하는 단위 면적당 광도(일정한 방향에서 물체 전체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

3) 노면표시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 반사 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함

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할 때 노면표시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된 휘도검사 성적서의 내용이 90%가 기준치 이상인지를 확인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교통과, 도로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별표]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처리 현황”과 같이 총 32건의 공사 중 “○○○○학교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0건은 휘도검사 성적서가 없었고, “2020년도 ○○○○○○○유지보수(단가계약) 공사” 등 2건은 휘도검사 기준 개수에 비해 측정 개소수가 부족한 성적서를 제출⁴⁾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2건(준공금액 1,190백만원)의 공사를 준공처리하였으며, “○○○○도로 재포장공사” 등 4건의 경우에는 시공업체로부터 준공일 이후 성적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준공처리하였다.

특히 202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명의 시의원이 관내 도로상 노면표시에 대한 휘도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2020. 11월 이후 “교통 노면표시 정비공사” 등 5건을 휘도검사 성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야간 및 우천 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안전장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및

4) (2건 휘도검사 제출 내역) 기준은 309개소, 휘도 측정은 124개소만 실시(185개소 부족 측정)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과 지방○○주사 ○○○을 훈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업무 등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도시재생과, 교통과, 기술보급과, 도서관운영과, 보건행정과, 아동친화도시과, 전략정책실, 체육과, 휴양림사업소, 회계과)

훈 계 대 상 자 ① 광양시 ○○실 지방○○주사보 ○○○

② 광양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 ○○ ○○○센터 리모델링 건축설계 용역 등 18건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

지방○○주사보 ○○○은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동 ○○ ○○○센터 리모델링 건축설계 용역 업무 담당자로, 지방○○주사보 ○○○은 2020. 7. 8.부터 2021. 1. 6.까지 도시재생과에서 ○○동 ○○광장 및 ○○○공연장 건축설계 용역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 1]과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 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1억원 미만	필수	×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 (우선적용)

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자료집 발췌

또한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¹⁾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 외²⁾의 설계를 발주하더라도 설계비 추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설계 용역 추정 가격에 따라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기획 업무는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설계 공모를 실시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광양시가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시재생과 등 9개 부서)는 2020. 4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2]와 같이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8건에 대하여 필수적인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1) 건축사,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적용 대상 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현황(2020. 4월~2022. 8월)

(단위: 천원)

용역명	발주 부서	추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기획 업무	사전 검토	공공 건축 심의	설계 공모	수행 능력 평가
계	9개 부서	18건						
○○○ ○○ ○○○센터 리모 델링 건축설계 용역	○○ ○○○	192,289 (192,289)	2020.00.00.	부	부	부	여	비대상
○○동 ○○광장 및 ○○○공 연장 건축설계 용역	○○ ○○○	235,439 (235,439)	2020.00.00.	부	부	부	여	비대상
○○동 ○○○○ 리모델링 건 축설계 용역	○○ ○○○	587,515 (587,515)	2020.00.00.	부	여	여	여	비대상
○○동 ○○○○○○○ 조성 건축설계 용역	○○ ○○○	307,657 (307,657)	2022.00.00.	부	여	여	여	비대상
○동 ○○○○○ ○○차고지 건설공사 기획 및 건축설계 용역	○○○	161,977 (140,984)	2020.00.00.	부	비대상	부	비대상	여
○동 ○○○○ ○○○○ 건축 공사 기획 및 건축설계 용역	○○○	151,212 (124,498)	2020.00.00.	부	비대상	부	비대상	여
광양시 ○○○○관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67,079 (75,041)	2020.00.00.	부	비대상	여	비대상	비대상
광양시 ○○○○도서관 건축설 계 용역	○○○ ○○○	219,685 (219,685)	2020.00.00.	부	여	여	여	비대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 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94,049 (82,539)	2020.00.00.	부	비대상	여	비대상	비대상
광양시○○○ ○○○○○○사 업 설계용역	○○ ○○○	64,386 (56,747)	2021.00.00.	부	비대상	여	비대상	비대상
광양○○○○○○○병원 ○○○ ○○○사업 설계용역	○○ ○○○	93,732 (82,747)	2021.00.00.	부	비대상	여	비대상	비대상
금호○○○○○○○센터 건립공 사 설계용역	○○ ○○○	98,052 (86,593)	2021.00.00.	부	비대상	여	비대상	비대상
광양시 ○○○역 ○○○○○○ ○ 건립사업 설계 용역	○○○○ ○○○	182,322 (182,322)	2020.00.00.	부	여	여	여	비대상
광양만권 소재부품 ○○○○○ ○ 건립공사 건축설계 용역	○○ ○○○	731,296 (731,296)	2021.00.00.	부	여	여	여	비대상
광양시 ○○○○○○○○센터 건 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36,066 (236,066)	2021.00.00.	부	여	여	여	비대상
광양시 ○○○ ○○○○○○ 설 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98,043 (86,318)	2022.00.00.	부	비대상	여	비대상	비대상
○○○○단지 ○○○○○○ 건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	○○○ ○○○	83,797 (73,578)	2020.00.00.	부	비대상	여	비대상	비대상
○○산 ○○○○○○ 건립공사 건축설계 용역	○○○ ○○○	221,176 (193,855)	2020.00.00.	부	여	여	여	비대상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회계과는 사업부서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의뢰 받아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공공건축물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공모만 수행하여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을 추진한 지방○○주사보 ○○○과 지방○○주사보 ○○○을 혼계하고(혼계)
- ② 앞으로 설계용역 추정 가격에 따라 사전행정 절차(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를 철저히 이행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488건을 발주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다.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저수지 개보수사업 및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7조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¹⁾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도지정문화재의 지정구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건설과)는 2021. 10월부터 2022. 9월까지 “○○○ ○○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2건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도 기념물(○○○○) 지정구역 내인데도 [표]와 같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 건설공사 현황(2021. 10월~2022. 8월)

(단위 : m)

연번	문화재명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문화재 이격거리	사업 추진부서
계	2개	2건			
1	○○○○(도 기념물)	○○제 ○○저수지 개보수사업 (2021.00.00.-2021.00.00.)	○○면 ○○리 산00-0번지 일원	지정구역 내 (0m)	건설과
2	○○○○(도 기념물)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22.00.00.-2022.00.00.)	○○면 ○○리 산00-0번지 일원	지정구역 내 (0m)	건설과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1. 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가.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도지정문화재(기념물 가운데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다.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

2.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동 ○○○○ ○○○○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교통과)

훈 계 대 상 자 ① 광양시 ○○○○○○과 지방○○○○○ ○○○

② 광양시 ○○과 지방○○○○○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21. 6월부터 2022. 7월까지 관공서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양질의 교통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동 ○○○○ ○○○○ 건축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2021. 6월~2022. 9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계	도급액	관급자재		
○동 ○○○○ ○○○○ 건축공사	연면적 4,070.95㎡	3,277	2,484	793	2021.00.00.~ 2022.00.00.	○○○○건설(주) (○○○)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 ○○○은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지방○○○○○ ○○○은 2022.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동 ○○○○ ○○○○ 건축공사를 추진한 ○○과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공사감독자, 준공검사자 지정 등 업무수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 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2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제5절 제4항 다호에 정한 임무¹⁾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및 별표 <공통소관>편 제23호에 따르면 각종 공사의 감독공무원 지정 및 준공검사원 지정에 대한 결재권자는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직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1)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

그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공무원을 준공검사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원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교통과)는 2021. 6월부터 2022. 7월까지 ○동 ○○○○ ○○ ○○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타과 직원인 ○○과 ○○○의 협조를 얻어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한 후 2021. 00. 00. ○○과에 감독공무원 지정 공문²⁾을 통보하였으면 공사감독관에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공사감독관(○○과 ○○○)에게 착공계 경유, 철골 시공상세도 승인, 준공(기성)감독조서(3회) 등 총 5회³⁾ 공사에 대해서만 공사감독관으로 참여시켰을 뿐 그 외의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실정보고 검토보고 등 19건⁴⁾의 공사감독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부당하게 사업담당자⁵⁾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통과는 기성검사 2회 및 준공검사 1회의 준공(기성)검사 공무원으로 담당 팀장을 지정하여 회계과로 통보⁶⁾하였고, 해당 준공(기성)검사 공무원⁷⁾은 전문지식 부족을 이유로 준공(기성)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검사를 완료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정된 공사감독관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사감독관의 권한이 없는 사업담당자가 공사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기성)검사가 완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교통과-00000(2021. 00. 00.)

3) 회계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2022. 00. 00.), 교통과-00000(2022. 00. 00.), 교통과-00000(2022. 00. 00.)

4) 회계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0(2021. 00. 00.), 교통과-0000(2022. 00. 00.), 교통과-0000(2022. 00. 00.), 감리 발송문서 제20220000-0호(2022. 00. 00.), 교통과-00000(2022. 00. 00.), 교통과-00000(2022. 00. 00.), 교통과-00000(2022. 00. 00.), 교통과-00000(2022. 00. 00.), 회계과-00000(2022. 00. 00.)

5) ○○○(2021. 00. 00 ~ 2022. 00. 00.), ○○○(2022. 00. 00. ~ 2022. 00. 00.)

6) 교통과-0000(2022. 00. 00.), 교통과-00000(2022. 00. 00.), 교통과-00000(2022. 00. 00.)

7) 기성 1차 - ○○○(1회, 지방○○주사), 기성2차 및 준공 - ○○○(2회, 지방○○주사)

3. 설계변경 및 준공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지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교통과)는 2021. 6월부터 2022. 7월까지 ○동 ○○○○ ○○

○○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별표 1] “시공 소홀·미시공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명세”와 같이 설계변경 신규단가 낙찰률 미적용, 시공 소홀, 미시공 등 9건의 사항에 대하여 31,938천원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교통과)는 2021. 6월부터 2022. 7월까지 ○동 ○○○○ ○○ ○○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명세”와 같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이 안전관리비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3,383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와 국토교통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교통과)는 2021. 6월부터 2022. 7월까지 ○동 ○○○○ ○○○○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표 2]와 같이 환경관리비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256천원을 집행하였다.

9) 환경관리비 산출 :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의 합)와 폐기물 처리비의 합

[표 2] 환경관리비 미정산 현황(2021. 8월)

(단위 : 원)

연도	환경보전비 계약액	사용금액 (청구금액)	부당청구액 (회수금액)	부당청구내역
계	2,871,324	2,614,849	256,000	
2021. 8.	2,552,590	2,324,590	228,000	증빙 서류(사진 등) 부적정 (단관파이프)
제비율	318,734	290,259	28,000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56천원이 부당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동 ○○○○ ○○○○ 건축공사를 소홀하게 추진한 지방○○○○○ ○○○,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31,938천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83천원 및 환경관리비 256천원 등 총 35,577천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¹⁾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별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명세”와 같이 “2020○○지구 ○○○○○○ 확포장공사” 등 16개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관리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²⁾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

1)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건설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1]과 같이 2020○○지구 ○○○○○○ 확포장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표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미승인 현황(2019. 11월~2022. 8월)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계획 승인	시행계획 변경 승인 여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8개	11,632,877	12,538,306				
1	2020○○지구 ○○○○○○○ 확포장사업	1,336,035	1,475,484	2020.00.00.~ 2021.00.00.	2020.00.00.~ 2021.00.00.	2020.00.00.	부
2	2021○○지구 ○○○○○○○ 확포장사업	2,160,816	2,221,794	2021.00.00.~ 2022.00.00.	2021.00.00.~ 2022.00.00.	2021.00.00.	부
3	○○지구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6,938	158,395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4	○○지구 ○○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263,649	1,453,195	2019.00.00.~ 2020.00.00.	2019.00.00.~ 2020.00.00.	2019.00.00.	부
5	○○지구 ○○○ 보강개발사업	6,412,562	6,905,360	2019.00.00.~ 2022.00.00.	2019.00.00.~ 2023.00.00.	2019.00.00.	부
6	광양시 ○○지구 ○○○ 구조물화사업	85,517	88,277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부
7	광양 ○○지구 ○○○ 구조물화사업	110,679	116,507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부
8	○○면 ○○리 ○○○ 구조물화사업	116,681	119,294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부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변경된 사업의 적정성 및 경제성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3. 신기술 등 기술사용료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3절 2. 다. 2). 다). (3)항 및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르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신기술 등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되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신기술 등의 기술보유자가 직접 하도급 및 관급자재로 공사에 참여한 경우 설계서에 반영된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 변경 감액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건설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2]와 같이 “○○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부당하게 반영된 기술사용료 3,250천원을 회수 및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표 2] 신기술 등 하도급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반영된 사업 현황(2019. 11월~2022. 8월)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특허명	계약방법 (하도급,관급)	내역에 반영된 기술사용료	비고
계	2건				3,250	
1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20.00.00.~ 2021.00.00.	○○○공법 (특허 00-0000000호)	하도급	862	회수
2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22.00.00.~ 2022.00.00.	○○-○○공법 (특허 00-0000000호)	하도급	2,388	감액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설계변경 및 준공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 공사감독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건설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3]과 같이 4개 사업의 시공 소홀 및 미시공분 등에 대한 43,011천원을 회수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미시공 부분에 대한 미회수 현황(2019. 11월~2022. 8월)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공사비 (천원)	지적내용	금액 (천원)	조치 내용
계	4건				회수 43,011		
1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20.00.00.~ 2021.00.00.	(주)○○○○	445,308	- 사토운반 거리 정산 - 여수로 되메우기 다짐 미시공 - 여수로 강관비계 미시공 - 가설창고 미시공	5,649	회수
2	2021 ○○지구 ○○○○○○○ 확포장사업	2020.00.00.~ 2022.00.00.	(주)○○	1,669,547	- 배수로 되메우기 다짐 미시공 - 암거 강관비계 미시공 - 암거 배수파이프 미시공 - 보조기충포설 및 다짐 미시공	7,754	회수
3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019.00.00.~ 2021.00.00.	○○○○건설	1,352,111	- 토공 기준틀 미시공 - 배수문 강관비계 미시공 - 가체절 성토다짐 미시공	5,504	회수
4	2020 ○○지구 ○○○○○○○ 확포장사업	2020.00.00.~ 2021.00.00.	(주)○○○○	1,092,981	- 배수로 되메우기 다짐 미시공 - 암거 되메우기 다짐 미시공 - 잡석부설및다짐 미시공 - 암거 시스템비계 미시공 - 암거 배수파이프 미시공	24,104	회수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① (주)○○○○(대표이사 ○○○)이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시공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445,308천원)³⁾에서 사토운반 거리 미정산(5.1km→0.4km) 및 여수로 되메우기 다짐 178m³, 여수로 강관비계 112m², 가설창고 1동을 시공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5,649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② (주)○○(대표이사 ○○○)이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시공한 2021 ○○지구 ○○○○○○ 확포장사업(1,669,547천원)⁴⁾에서 배수로 되메우기

3) 사업규모 : 그라우팅 148공, 여수로 1식, 사통·복통 1식 등

4) 사업규모 : 배수로정비 2.1km, 농로확포장 2.2km 등

다짐 354m³, 암거 강관비계 102m², 암거 배수파이프 5m, 보조기층 다짐 882m³를 시공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7,754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③ ○○○○건설(대표이사 ○○○)이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시공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1,352,111천원)⁵⁾에서 토공 기준틀 17개소, 배수문 강관비계 78m², 가체질 성토다짐 7,740m³를 시공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5,504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④ (주)○○○○(대표이사 ○○○)이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시공한 2020 ○○지구 ○○○○○○ 확포장사업(1,092,981천원)⁶⁾에서 배수로 되메우기 다짐 3,786m³, 암거 되메우기 다짐 472m³, 잡석부설 다짐 113m³, 암거 시스템비계 136m², 암거 배수파이프 6m를 시공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24,104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5.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시스템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시설관리자⁷⁾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농업생산

5) 사업규모 : 방조제 개보수 1,056m 등

6) 사업규모 : 배수로정비 908m, 농로확포장 884m 등

7)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영농기 전에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표는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영농기 전에는 반드시 실시) 그 결과를 RIMS에 등록·관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건설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4]와 같이 248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2,728회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1,799회만 실시하고 929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한 1,799회 중 1,363회는 RIMS에 등록·관리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표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기점검 현황(2019. 11월~2022. 8월)

(단위 : 회)

구 분		정기점검 실시			RIMS 관리	
		대상	점검	미점검	등록	미등록
계		2,728	1,799	929	436	1,363
2019년	4분기	248	139	109	-	139
2020년	1분기	248	228	20	225	3
	2분기	248	142	106	29	113
	3분기	248	139	109	26	113
	4분기	248	139	109	26	113
2021년	1분기	248	228	20	26	202
	2분기	248	139	109	26	113
	3분기	248	139	109	-	139
	4분기	248	139	109	26	113
2022년	1분기	248	228	20	26	202
	2분기	248	139	109	26	113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유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관리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2,388,000원을 설계변경 감액하고, 과다 지급된 43,873,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점검·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안전총괄과, 도로과, 관광과, 생활폐기물과, 시설관리과, 옥룡면, 태인동, 광영동)

훈 계 대 상 자 ① 광양시 ○○면 지방○○서기 ○○○

② 광양시 ○○과 지방○○주사 ○○○

③ 광양시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 ○○○○ 육교” 등 404개소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서기 ○○○는 2019.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시설물안전법」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는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시설물안전법」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방○○서기 ○○○는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시설물안전법」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 보고해야 하고, 민간관리주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안전총괄과)는 2019년부터 2022. 8월까지 시설물 관리주체(공공, 민간)가 [표 1]과 같이 수립대상 404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을 1,500회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공공관리주체로서 31회를 수립하지 않았고, 민간관리주체가 1회를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현황(2019~2022. 8월)

(단위 : 개소)

연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1,500	612	888	1,468	581	887	32	31	1
2019	358	148	210	337	128	209	21	20	1
2020	368	153	215	364	149	215	4	4	-
2021	370	155	215	364	149	215	6	6	-
2022	404	156	248	403	155	248	1	1	-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등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되 그 시기는 [표 2]와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자료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제2항 [별표 3] 재구성

또한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한 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FMS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민간관리주체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이 실시되도록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도로과 등 7개과)는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시설물 관리주체(공공, 민간)가 [표 3]과 같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을 총 2,263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공공관리주체로서 268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민간관리주체가 1회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3] 정기안전점검 실시 현황(2019. 11월~2022. 8월)

(단위 : 회)

연도	구분	정기안전점검 대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계		2,263	926	1,337	1,994	658	1,336	269 ⁸⁾	268	1
2019	하반기	368	153	215	357	143	214	11	10	1
2020	상반기	368	153	215	323	108	215	45	45	－
	하반기	368	153	215	256	41	215	112	112	－
2021	상반기	370	155	215	344	129	215	26	26	－
	하반기	385	156	229	345	116	229	40	40	－
2022	상반기	404	156	248	369	121	248	35	35	－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년부터 2022. 8월까지 공공관리주체로서 [표 4]와 같이 정밀안전점검 총 44회 중 10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정밀안전진단 총 10회 중 6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4]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2020~2022. 8월)

(단위 : 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실시	미실시	대상	실시	미실시	대상	실시	미실시
정밀 안전점검	계	58	58	-	121	111	10 ⁹⁾ (8)	37	37	-
	공공	7	7	-	36	26	10 (8)	1	1	-
	민간	51	51	-	85	85	-	36	36	-
정밀 안전진단	계	2	2	-	14	8	6 ¹⁰⁾ (4)	1	1	-
	공공	1	1	-	9	3	6 (4)	-	-	-
	민간	1	1	-	5	5	-	1	1	-

주 : ()은 점검 및 진단 시기가 지난 후 실시한 시설물

8) 도로과 238, 관광과 4, 생활폐기물과 3, 시설관리과 15, 옥룡면 4, 태인동 4, 광영동 1, 민간 1

9) 도로과 10개소

10) 도로과 6개소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도로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총괄과에서 13회¹¹⁾에 걸쳐 보낸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독려” 공문을 접수하고도 [표 3], [표 4]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총 254회에 걸쳐 미 실시 하는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시설물의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 저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점검·진단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사고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저해되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시설물안전법 따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 지방○○서기 ○○○, 지방○○서기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1) 2020년 : 3회(안전총괄과-0000, 00000, 00000), 2021년 : 5회(안전총괄과-000, 0000, 0000, 00000, 00000), 2022년 : 5회(안전총괄과-000, 0000, 0000, 0000, 00000)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일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상수도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2020. 4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1]과 같이 일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일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계약금액)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계	2건	8,490		
1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3,799	2020.00.00. ~2022.00.00.	(주)○○건설 (○○○)
2	○○○생활용수 확충사업 (○○지구)	4,691	2020.00.00. ~2023.00.00.	○○건설(주) (○○○)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 6] 2. 품질

관리비 나. 품질관리활동비 편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관리활동비¹⁾ 중 시험관리인²⁾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는 품질관리활동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상수도과)은 2020. 7월부터 2022. 12월까지 추진 중인 ○○○○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초급 품질관리기술인의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품질관리활동비에 반영하여 32,560천원의 감액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예산을 낭비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일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초급 품질관리기술인)

따라서 광양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상수도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일반수도 정비사업에서 설계에 과다 반영되어 감액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³⁾

① 토공사 9,055m³ 다짐 시 램머 미사용으로 실제로 사용한 콤팩터로 변경이 필요하여 25,553천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② 가물막이 97m² 설치 시 P.P.마대 미사용으로 실제로 사용한 톤마대로 변경이 필요하여 4,246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 29,799천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2) ○○○ 생활용수 확충사업(○○지구)⁴⁾

① 토공사 5,169m³ 다짐 시 램머 미사용으로 실제로 사용한 콤팩터로 변경이 필요하여 14,421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② 간섭관로 1개소를 이설(81,227천원)하지 않고 실제로 지장물 보호공 시행(416개소 → 666개소)으로 변경(59,389천원)이 필요하여 21,838천원(관급자재 포함)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 36,259천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3) 사업규모 : 비상연계관로 매설 L=8.1km 등

4) 사업규모 : 송·배수관로 매설 L=18.7km 등

따라 2개의 일반수도 정비사업에서 품질관리비 32,560천원 및 과다 계상된 공사비 66,058천원 등 총 98,618천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등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광양시(하수도과)

훈 계 대 상 자 ① 광양시 ○○과 지방○○서기보 ○○○

② 광양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 12월부터 2022. 8월까지 [표 1]과 같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 및 시행 중이다

[표 1]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계약금액)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계	4건	37,227		
1	○○ ○○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378	2000.00.00. ~ 2020.00.00.	○○○건설(주)
2	○○ ○○ ○○○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91	2018.00.00. ~ 2020.00.00.	○○건설(주)
3	○○○ ○○○○ 개량사업	19,806	2021.00.00. ~ 2024.00.00.	(주)○○○○건설
4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052	2021.00.00. ~ 2024.00.00.	○○건설(주)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서기보 ○○○은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지방○○주사 ○○○은 2017.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아닌 경우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인가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시설면적, 하수관로의 길이 등이 10%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중 하수관로의 길이가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시·도지사 변경인가를 이행하여야 하고,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용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하수도과)는 2017. 12월부터 2021. 6월까지 [표 2]와 같이 “○○○○○○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2건의 하수관로 길이가 10% 이상 증감¹⁾하였는데도 환경부 협의 절차 및 시·도지사 변경인가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변경도 환경부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1) 최초 10퍼센트 증·감 시 담당자 : (○○ ○○) 주무관 ○○○, (○○ ○○) 주무관 ○○○

[표 2]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부적정 현황(2017. 12월~2021. 6월)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시설용량, km)			사업기간	비 고 (시공사)
		당 초	변 경	증 액 (증감율)		
1	○○ ○○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39	3.98	증 1.59 (66.50%)	2000.00.00. ~ 2020.00.00.	○○○건설(주)
2	○○ ○○ ○○○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43	2.19	증 0.76 (53.14%)	2018.00.00. ~ 2020.00.00.	○○건설(주)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하수도 국고 보조금을 사업 내용과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m³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하수관로의 경우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전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청소 및 준설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기술진단 대상인 하수관로(850.0km)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관

리 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하수도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표 3]과 같이 2017년 이전에 준공한 하수관로 708.0km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215.7km²⁾만 실시하고 492.3km(69.5%)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 3] 하수관로 기술진단 미실시 현황

(단위 : km)

처리구역	연장	기술진단 대상관로(km)			기술진단 실시 여부	비 고 (실시)
		합계	분류식	합류식		
계	850	850	844	6	실시 L=215.7km, 미실시 L=492.3km 시기 미도래 L=142km	
○○처리구역	324	324	318	6	실시 52.7km, 미실시 211.3km 시기 미도래 60km	(2020년)
○○처리구역	83	83	83		실시 26km, 미실시 28km 시기 미도래 29km	(2017년)
○○처리구역	277	277	277		실시 35km, 미실시 195km 시기 미도래 47km	(2022년)
○○처리구역	39	39	39		실시 35km 시기 미도래 4km	(2021년)
○○처리구역	60	60	60		미실시 58km 시기 미도래 2km	(2020년)
○○○○ ○○ 하수처리구역	67	67	67		실시 67km	(2018년 ~2022년)

자료 : 광양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 하수관로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전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청소 및 준설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시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적기에 보수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4.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 하수관로 : 2017년(26.0km), 2020년(52.7km), 2021년(35.0km), 2022년(35.0km), ○○○ ○○하수처리구역 : 2018년~2022년(67k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하수도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2개의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설계에 과다 반영되어 감액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 개량사업³⁾

① 현장 내 보관 중인 관급자재 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보통인부 인건비 24개월을 반영하여 공사비 14,400천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② 가설사무실 부지 사용료 실비 미 정산으로 82,854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있는 등 총사업비 97,254천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2)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⁴⁾

현장 내 보관 중인 관급자재 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보통인부 인건비 24개월

3) 사업규모 : 차집관로 정비 L=5.05km, 맨홀정비 62개소

4)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증설 5,000m³/일

을 반영하여 공사비 22,514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① 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서기 보 ○○○과 지방○○주사 ○○○을 혼계하고(혼계)
- ②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하수도 정비사업 2개에서 과다 계상된 공사비 119,768천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설기계사업 등록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민원지적과)

훈 계 대 상 자 광양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270개¹⁾의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건설기계 등록·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건설기계대여업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²⁾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건설기계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기장 소재지 시장·군수가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기계대여

1) 건설기계대여업 254개, 건설기계매매업 16개

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업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14]에 따르면 일반 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 5대 이상 보유하는 등 등록요건³⁾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제2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하는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민원지적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별표 1]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명세”와 같이 등록된 일반 건설기계대여업체 160개 중 104개(65.0%)가 건설기계 5대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고,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체 94개 중 50개(53.2%)가 건설기계 1대도 보유하지 못하여, 총 254개 중 154개(60.6%)가 등록요건 미달인데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3) (건설기계 대수) 일반 :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 : 4대 이하(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

출 것
(주기장) $24\text{m}^2 \times (\text{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text{m}^2 \times (\text{타워크레인대수})^{0.815}$ 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시·군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군에 연결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 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케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7.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254개소 중 72개소, 주기장 임대계약 만료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254개소 중 51개소, 주기장의 등록기준 면적이 부적정한 254개소 중 34개소, 바닥의 평탄성을 확보하지 못한 254개소 중 24개소가 등록요건 미달인데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기준에 적합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사업을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기준 미달의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총 254개 중 182개, 71.7%에 달하는 부적합한 건설기계대여업체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설기계매매업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기장 소재지 시장·군수가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16]에 따르면 건설기계매매업은 면적이 165㎡ 이상이고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 하기에 적합한 주기장(대지)을 확보하는 등 등록요건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4) (주기장(대지)) 165㎡ 이상 /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 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무실) 건설기계매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 것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5천만원 이상 /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시·군에 연결한 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제2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건설기계매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건설매매대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하는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민원지적과)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별표 2] “건설기계매매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명세”와 같이 등록된 일반 건설기계매매업체 16개 중 7개(43.7%)가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을 보유하지 못하여 등록요건 미달인데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로 사용권 및 바닥의 평탄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 16개 중 4개소가 등록요건 미달인데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기준에 적합한 건설기계매매사업자에게 사업을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기준 미달의 건설기계매매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총 16개 중 8개, 50.0%에 달하는 부적합한 업체가 건설기계매매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① 건설기계사업 등록·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기준 미달인 건설기계대여업 182개소 및 건설기계 매매업 8개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 및 기간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재해영향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광양시(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관광과, 철강항만과)

내 용

1. 업무개요

광양시는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19. 11월부터 2022. 8월까지 48개소¹⁾의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재해영향평가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에 영향²⁾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관리책임자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

1) 건설과 4건, 도시재생과 2건, 도로과 7건, 건축과 13건, 허가과 14건, 관광과 2건, 지역경제과 2건, 철강항만과 1건, 체육과 1건, 아동친화도시과 1건, 산단과 1건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재해영향평가 (면적) 5만²m 이상, (길이) 10km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²m 이상 5만²m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건설과 등 6개 부서)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별표]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부적정 명세”와 같이 개발 공사를 시작한 27개소의 사업 중 24개소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25개소는 착공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를 준공한 10개소 중 8개소는 준공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위험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재해예방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재해영향평가 등의 이행실태 등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4 및 제6조의5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2.6.2 협의권자의 의무 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광양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야 하며, 협의권자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광양시(건설과 등 6개 부서)는 2022. 9. 26. 감사일 현재 [별표]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부적정 명세”와 같이 개발 공사를 시작한 27개소 중 25개소의 관리대장에 이행상황 등을 기록 및 비치할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안전총괄과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건설과 등 6개 부서에 통보한 48개소의 사업에 대한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1회도 시행하지 않아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통보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로과는 2021. 00. 00. ‘○○○ ○○○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의 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협의 받은 “○○○○○ 및 ○○○○(50년 빈도) 총 8개소”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2022. 9. 26.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

그로 인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이행실태 미점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고,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미 설치로 개발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량 증가로 인해 토사 재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광양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양시장은 건설과 등 6개 부서에 대해 재해영향평가의 관리책임자, 착공·준공 통보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도록 하고, 안전총괄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